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09 **연간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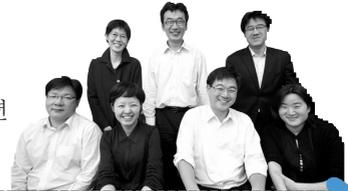
희망을 그리는 길, 변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감이 함께 합니다

희망을 그리는 길

공감

이 권
출판

- 04 프롤로그
- 05 여는 글
- 06 공감의 지향
- 07 한 눈에 보는 공감의 2009년



11 공감이 하는 일

- 12 함께하는 공익소송
- 16 찾아가는 공익법교육
- 20 법제도 개선 및 연구조사

27 공감의 활동영역

- 28 여성인권
- 31 장애인권
- 35 이주와 난민
- 38 빈곤과 복지
- 42 주민자치
- 45 국제인권
- 49 공익법 일반
- 53 공익법교육 · 중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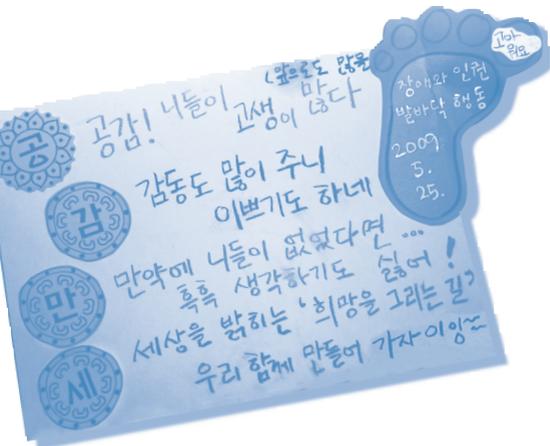
58 공감이야기

- 58 공감 5주년 행사 후기 | “공감 다섯 살, 참 고맙습니다”
- 61 언론을 통해 보는 공감이야기(한겨레21) | 낮은 곳으로 임하는 법률가들 있음에...

65 기부자이야기

- 65 채민이는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았어요
- 68 기부자님들의 한마디!

- 70 2009년, 공감활동 리스트
- 87 공감이 걸어온 길
- 90 한 눈에 보는 공감살림
- 92 후원안내
- 94 에필로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비영리로 운영되며,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삼은
공익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공감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인권을 보장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인권의 경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공익법활동'으로 공감대를 만들고 널리 퍼져,
'법'을 인권 보장과 사회 변화를 위한 열린 도구로서 기능하게 하는
다양한 흐름이 효과적으로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그리는 길,
변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감이 함께합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달팽이 더디 가는 걸음도 부지런한 제 길!

법률가이며 활동가를 꿈꾸며 달려온 길, 햇수로 7년째입니다. 그 기간 100미터 달리기하듯 과속 질주를 했다면, 오늘 공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걷는지 달리는지 분간 되지 않는 모양으로 그저 쉼 없이 발걸음 놓아 공감은 지금 이곳에 도달했습니다.

강좌로 만난 인연이 인턴으로, 다시 인턴에서 열혈 후원자로 지속되는 고운 인연들은 공감의 든든한 뒷심입니다. 사건으로 인연 맺은 분들이 보내주시는 박카스 한 상자, 빵 한 봉지, 제철 과일 한 상자는 공감 구성원을 순식간에 재충전시켜주는 비타민입니다. 공감 변호사처럼 공익변호사가 되겠다는 후배들의 희망찬 포부는 공감에게 초심을 밝혀주는 서슬 푸른 등대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거리를 던져주시는 현장 활동가들은 공감의 인권감수성을 베푸는 시커먼 숲들입니다. 온정어린 눈빛으로 지지와 격려 보내주시는 기부자님들은 공감에게 품 너럭한 심터입니다. 때론 따뜻한, 때론 서늘한 동료들은 서로에게 아픈 스승이자 즐거운 길동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지금 이곳에 공감이 있습니다.

2009년 한해에도 공감은 관계에서 많은 것을 깨우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2009년 1월, 공감은 만 다섯 살을 맞이했습니다. 만 5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5월 25일 세미나 '공익법운동의 성과와 도전' 과 후원행사 '공감 다섯 살, 참 고맙습니다.'를 잘 치러 냈습니다. 후원행사가 기록제가 되어 현재 약 1,000여 명의 기부자님들이 정기적으로 후원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참 든든하고 힘나는 일입니다.

뜻깊은 승소 소식으로 공감 사무실에 환호가 울렸습니다. 주민소송 도입 후 첫 승소판결을 받아냈지요, 바로 '위법한 지방의회 의정비 지급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주민소송'을 대리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대리모로 유용당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여성의 상처에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HIV 양성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아 다문화가족의 가족결합권이 보호되었습니다.

또한 소수자·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감의 연대 활동도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이주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 해외입양인 인권보호를 위한 입양법 개선 활동, 난민 인권실태 개선을 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난민권리회의 참석, 표현의 자유에 관한 UN 특별 보고관 초청 심포지움 기획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Brittan Heller님이 2009년 9월부터 공감 5대 펠로우로 결합해 국제인권 전문성이 더욱 보강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바로 기부자님과 공감을 지지해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2010년 한해, 주저 없이 약속드릴 수 있는 점은 올해도 공감은 느리게 더디게 계속 걸어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나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길에서 만나 뵈 수 있길 고대합니다.



공감의 지향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구체적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환경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 인권의 경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1 소수자 인권보장 및 인권의 경계 확장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변화가 모색되는 다양한 지점에서 법률전문가로서의 가능한 실천들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2 변화를 지향하는 법적 실천

법을 인권보장과 사회변화를 위한 열린 도구로 기능하게 하는 실천을 '공익법활동'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3 공익법활동의 활성화



3 HIV양성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취소소송 승소

한국 출입국관리법은 전염병환자인 경우, 전염병 종별의 구분 없이 모두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에이즈기구(UNAIDS) 및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HCHR)은 HIV 감염인이 입국한다는 사실만으로 공중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지는 않으므로, HIV 감염 상태만을 가지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이며 공중보건의 명목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상당수의 OECD국가는 HIV/AIDS 감염을 이유로 한 출입국통제를 하고 있지 않다.

공감은 HIV 양성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승소하였다.

4 예비로스쿨생, 예비사법연수원생 대상 제2회 공감 인권법 캠프 개최

일시 | 2009년 2월 19일~21일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5 위법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주민소송 승소

“주민소송 제도가 시행된 이래 승소한 첫 사례”

공감은 2008년 도봉구/금천구/양천구 주민들을 대리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위법하게 지급된 의정비 환수를 위한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 5월 주민소송제도 도입 이래 첫 승소판결을 받았다.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할 뿐더러 법령에 정한 절차와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잘못된 지방자치행정을 바로잡고 수익 원에 달하는 지방재정 손실분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6 공감 5주년 기념 세미나 ‘공익법 운동의 성과와 도전’ 및 후원행사 ‘공감 다섯 살, 참 고맙습니다’ 개최

일시 | 2009년 5월 25일

장소 |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장

7 대리모 유용·친권 침해받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공감은 친권과 양육권, 인격권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은 베트남 여성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여성에게 한국인 전 남편이 2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8 세입자 주거이전비청구 집단소송 대리

공감은 주택재개발·뉴타운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집단소송 사업에 소송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 공감은 이 소송을 통해서 주택개발사업에서의 원주민 배제와 세입자 권리에 대한 이슈를 제기함과 동시에 세입자의 구체적인 권리 실현을 꾀하고자 하며, 현재 7개 구역, 100여 명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9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UN특별보고관 초청 워크숍 기획 및 진행

일시 | 2009년 10월 13일 ~ 14일

장소 |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프로그램 |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 및 유엔 특별절차의 활용 워크숍>



10 외국인 상점 출입국단속 국가배상 청구소송 승소

공감은 여러 이주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법적 근거 및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출입국단속반원들의 길거리 불심검문의 문제점, 주거·사업장 등 무단진입 단속의 불법성, 불법적인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와 인권침해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여 왔다.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출입국단속반원들의 단속행위, 연행, 구인, 구금과 관련하여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적법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해 오고 있다.



함께하는 공익소송

찾아가는 공익법교육

법제도 개선 및 연구조사

공 익 변 호 사 그 룹 공 감

공감이 하는 일



1 함께하는 공익소송

공감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적 관행, 우리 사회의 공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률자문·소송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한 한 걸음

⊙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소송 (미네르바 사건)

- 2008헌바157, 2009헌바88,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미국산쇠고기수입고시 재협상을 촉구하는 범국민적 촛불집회는 광화문, 서울시청광장 뿐 아니라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의 야고라 등 온라인공간에서도 폭발적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이때부터 정부는 온라인공간에서 미국산쇠고기수입고시에 대한 비판,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 현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원인분석과 대응 등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들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네티즌들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허위의 통신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경우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입니다.

공감의 김영수 변호사를 비롯한 김갑배, 박찬중 변호사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지난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과 관계기관(방송통신위원회)이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살 만한' 세상을 위하여

○○ 주택재개발·뉴타운 세입자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공감은 2008년 흑석동 재개발구역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청구소송 제1심 승소에 이어, 서울특별시 내 7개 주택재개발·뉴타운 구역에 거주했던 100여명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이 소송을 통해서 각종 주택개발사업에서의 원주민 배제와 세입자 권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세입자들의 구체적 권리실현을 꾀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1심에서 각기 엇갈린 판결들이 나온 상태이므로, 주거이전비 지급요건에 대한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입니다. 공감은 주거이전비 청구 뿐만 아니라 배제되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소송과 입법운동도 계속해 가겠습니다.

난민인정, 1분 만에 심사하고 1년 이상 기다리라니...

○○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 승소

공감에서 소송대리한 버마 소수민족 여성에 대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이 2009.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난민신청자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 패소판결을 받았던 사안이어서, 이번 항소심의 선고결과가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버마는 이미 심각한 인권침해국가로 평가받고 있고, 세계 각국 정부는 버마난민에 대하여는 특히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2008년 9월까지 전체적으로 난민지위를 인정한 수가 불과 86명이고, 그 중 버마인 난민인정자는 32명에 불과합니다.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난민인정과 더불어 지나치게 장기간인 난민심사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방치는 또 다른 인권침해입니다.

이번에 승소한 여성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신청일부터 1심 재판 때까지 1년 9개월의 기간동안 외국인보호소에 구금이 되어 1심 소송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난민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입증정도를 완화하여, 버마 소수민족에 대한 난민인정을 하였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2009년 주요 소송 / 고소·고발 / 진정

주 제	내 용
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주식회사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조치 사건 재정신청 • 베트남 여성 대리 부당한 혼인해제를 이유로 한 혼인무효 및 손해배상청구 • 가족관계등록법 제도 개선 권고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양육권 침해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 손해배상청구 및 양육자 변경청구 • 라이베리아여성 대리 한국인 친부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 몽골여성 이혼 및 친권자지정청구 • 한부모 가정의 과거 양육비 청구 및 친권자 변경 청구 • 이주여성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자 지정청구 • 태국여성의 한국인 친부를 상대로 한 친권자 지정 및 유아인도청구 • 나이지리아 여아의 한국인 친부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 국제결혼 중개업체 보도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이주노동자방송국 대표 변호
장 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계천 접근권 차별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 수사절차상 인권침해 장애여성의 국가배상청구 • 강제추행 피해 중국동포 장애여성의 손해배상청구 • 장애를 이유로 한 책임무 거부에 대한 문제제기 과정에서 학교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청각장애인 교수 변호 •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웃의 집단괴롭힘 사건 고소대리
이주와 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중국동포 부당구금 사건 관련 보호 및 강제퇴거명령 취소청구 • 산업연수생-중소기업중앙회 손해배상청구 • 김해·수원·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불법 출입국단속 관련 국가배상청구 • 길거리 불법 출입국단속 손해배상청구 • 벌금형 받은 중국 유학생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처분 취소청구 • 외국인강사 HIV/AIDS 출입국시 신체검사서 제출요구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 이주노동 전 지도부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 중국 파룬궁 회원 P씨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청구 • 중국 파룬궁 회원 J씨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청구 •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건 상고심 • 조선족(무국적자)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 취소청구 • 버마 버마행동 회원 8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청구 • 버마 친족 여성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청구 상고심 • 버마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헌법소원 청구

주 제	내 용
빈곤과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세군 노숙인쉼터 설치·운영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청구 항소심 • 흑석동 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청구 항소심 •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의뢰 부양료심판청구 • 재개발/뉴타운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청구 집단소송(7개 구역) • 장안4동 공용주차장 도시계획취소건(공익소송신청) 국민감사청구 • 비닐하우스촌 주민 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 • 간주부양비 위법이유로 한 생계급여처분취소청구 • 용산참사 관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속된 철거민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적부심사청구 변호인 활동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 변호(용산참사 철거민 공동변호인단 참여) -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 - 법원의 수사기록열람·등사명령을 불이행한 검사들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소 대리
주민자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시 지방방비 재정환수를 위한 주민소송 항소 • 청양군 주민소송(청양군업무추진비, 예산낭비 상고) • 도봉구/양천구/금천구/성동구의회의원 의정비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민소송 • 시도지사 업무추진비집행 공직선거법 위반 건 고발
공익법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양전쟁당시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행정소송 • HIV 감염 외국인 출국명령취소청구 상고심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반 사건 항소심 변론 및 위헌법률심사 헌법소원심판청구 • 한국타이어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청구 • 사법피해자 검찰불기소처분 이유로 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상고심 • 이○○ 의경 항소심 변호 • 내부고발 후 직장 왕따로 인한 해고무효확인 청구 •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및 산업분쟁조정위원회 심리 진행 • 군 의문사 유족의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 취소청구 항소심 • KT 공익제보자 재결취소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 식약청 공익제보자 재정신청 • 선거관리위원회 공익제보자 파면취소 소청심사청구 • 전국여성노조 해고무효확인청구 • 교도소 내 트랜스젠더 수형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및 자해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2 찾아가는 공익법교육

공감이 하는 일

공감은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사회적 약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익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공익인권법 교육을 합니다.

공감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와 공동으로 '이주분야 국제조약의 국내이행 강화를 위한 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정정훈 변호사, 황필규 변호사, 소라미 변호사, 장서연 변호사가 강의를 맡았고, 이주관련 단체 활동가 및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정훈 변호사와 함께한 첫 번째 강의에서는 노동 관련 국내의 법규정을 다루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주요 협약 및 국제연합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 관련법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살펴보고, 과거의 산업연수생 제도부터 현재의 고용허가제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및 관련법규정이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 놓인 보통 사람들"이라는 짧지만 상징적인 구절로 운을 댄 황필규 변호사와 함께한 두 번째 강의에서는 출입국 관련 국내의 법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차별금지의 원칙에 기반한 국제인권법상 보장된 이주민의 지위 및 권리와, 국내법규정이 이주민에게 실제로 보장하고 있는 지위 및 권리 간의 간극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처우의 문제점과 현재 '출입국관리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했습니다.

이주여성 관련 국내외 법규정을 다룬 소라미 변호사와 함께한 세 번째 강의에서는 여성의 권리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규약인 국제연합의 '여성차별금지협약'을 살펴보았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 등 관련 국내법이 가지는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주여성 유입과정에서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부조리한 행태를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서연 변호사와 함께한 네 번째 강의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권 보장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국제연합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대표되는 국제법과 '사회권위원회'의 주요 일반논평을 통해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헌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상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회권의 종류 및 내용, 그리고 실제로 이주민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여성인권]

날짜	주관단체명	교육 제목
1. 7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이주여성 교육강의
1. 20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교육 상담사 법률교육
2.24, 4.20, 6.15, 7.21	경찰수사연수원	성폭력수사 전문과정 강의 - 성폭력 관련 법제
6. 1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장애인성폭력 상담원 교육'
6. 17	서울시간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생활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 사례 중심의 법과 인권
7. 2	한국법제연구원	이주여성 아동 관련 법제 및 개선 방향 강의
7. 6	서울지방변호사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단 워크숍 강의
7. 7	다문화가족지원네트워크	아동양육방문지도사 대상 법률교육
7. 11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가정폭력상담원 교육과정 다문화법제 법률교육
7. 14	법관연수원	법관연수 '여성과 법 그리고 법원' 과정 이주 여성의 인권실태 및 법적 현안 교육
8. 28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강사 양성 과정 '이주여성과 법' 강의
9. 2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중구지부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강좌 '행복한 여성' 2기 교육(이주여성/성폭력 관련 법률)
9. 16	사법연수원	'여성과 법' 특강 - 결혼이주여성 인권 실태 및 관련 법제도 현황
10. 14	서울대학교	'NGO와 법의 지배' 강의 -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법제도 현황
10. 1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강의
11. 24	연세대학교	'남녀평등과 인간화' 수업 특강 - 다문화가족지원 법제에 대한 젠더적 고찰
11. 28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강 '이주여성 인권실태와 법제현황'
12. 7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법률교육
12. 9	다시함께센터	내부포럼 특강 '외국인여성 성매매 실태 및 법제 현황'

[장애인권]

날짜	주관단체명	교육 제목
3. 1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사업 상담사교육' 중 장애인차별금지법, 여성폭력관련법 교육
3. 25	조치원 YWCA	장애여성 성폭력 관련 법률교육
6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교육 - 정신질환자 관련 국내외 기준
6. 17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 차별 상담 교육 - 법적 기본대응
7. 2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강사 아카데미 강의
8. 27	전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장애인상담소 권역 2009년 여름 워크숍 강의

[이주와 난민]

날짜	주관단체명	교육 제목
2	이주노동자방송국	신입기자교육 - '이주민의 인권'
3	창원 이주노동자센터	이주여성 / 노동법 관련 법률교육
4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	출입국관리법, 고용허가제법 개정안 관련 이주민 활동가 교육
6.20, 6.27, 7.4	숙명여대 평생교육원	다문화교육사 양성과정 교육
7. 24	전남대 공익법센터	연수교육 - 이주민과 인권
7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젊은 여성 지도자 세미나 - '공감 & 이주민 인권' 강의
7	기자소모임 '말도 안되는 모임'	'이주민의 인권' 강의
7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활동가수련회 강의
8	대한변호사협회	이주외국인법률지원변호사단 교육과정 - 이주외국인 법제, 관행과 인권
9	서울지방변호사회	난민세미나 '난민판례분석' 강의
9	경기도인재개발원	'다문화사회의 이해(외국인주민의 법적 지위)' 강의
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인권법 강좌 - 이주민의 권리 강의
10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인권학교 '이주민과 인권' 강의
10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재단 동천	난민법 워크숍 - 난민판례 강의
10	성인종차별 대책위	워크숍 강의
11. 20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이주민의 사회권에 관한 법률교육 - '이주노동과 국제기준', '출입국과 국제기준', '이주여성과 국제기준', '이주민의 사회보장과 국제기준' 강의
11	피난처	난민 대상 난민법 설명회 '난민법 제정안 개요' 특강
11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민의 권리와 국제인권기준' 강의

[빈곤과 복지]

날짜	주관단체명	교육 제목
1	성가정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법률교육 - 생활법률문제
1	대한변호사협회 노인특별위원회	수도권 지역 노인복지관 상담원 대상 법률교육
1. 15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노인 관련 업무종사자 대상 노인 소비자 권보호방안 법률교육

[국제인권]

날짜	주관단체명	교육 제목
10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아시아인권센터	국제인권 강좌 - 국제인권변론 강의

[공익법 일반]

날짜	주관단체명	교육 제목
1	인권더하기법률	대학생 인권법캠프 -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강의
1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연수생변호사실무수습교육과정 - 공익변호사 강의
2	일가재단	조찬모임 공감소개 특강
2	방송통신대학교	인권법 TV 강좌- 인권판례연구 진행 (~5월)
2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원양성 법률교육 진행
3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실무수습 사법연수생 대상 강연 - 공익변호사의 활동
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공익법 강의
4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공거버넌스와법센터	'희망을 그리는 법률가의 길' 강의
4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변호사의 역할' 강의
4	한양대학교	인권법 강의
4	천안 지역사회연대포럼	'사회복지와 인권' 강의
6	서이초등학교	법률교육 강의
6. 8	서강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특강
6. 25	여성가족재단	'소통과 나눔으로 성장하는 대학생 여행(女幸) 서포터즈 리더십 캠프' 강의
7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 강의 - 기부금품모집법의 연혁 및 내용
7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모임	'국제인권변론' 강의
7. 28	대한 YWCA	평화이슈페스티벌- '대학생평화 나눔운동' 주제 강의
9. 16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법' 강의
9. 28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공감이 바라보는 인권과 법' 강의
10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공익법 강의
10. 13	사법연수원 법여성학회	'여성인권과 공익소송' 특강
11	대한AIDS예방협회	예방법 강의
11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희망을 그리는 법률가의 길' 특강
11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NGO와 법의 지배 - 시민운동과 공익소송' 강의
11	성균관대학교 공익인권법학회	'공익법활동의 현황과 변호사의 역할' 강의
11. 19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인권으로서의 주거권과 그 실현' 강의
11. 27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 공익활동과 공감의 공익소송' 강의
12	서일초등학교	법률교육 강의
12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주일 인천서운동성당 미사 강론
12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공익법 강의

3 법제도 개선 및 연구조사

공감이 하는 일

공감은 소수자·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공익법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정책에 대해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합니다.

⊙ “입양촉진에서 입양아의 인권보호로” 입양 관련 법 개정활동

공감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모임(TRACK), 국외입양인연대(ASK), 뿌리의 집과 공동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입양법 개정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당사자들, 비혼모 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입양 정책을 개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쟁점들을 바탕으로 '입양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발제를 맡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①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입양정책 전환, ②법원의 개입을 통한 아동의 권리 보호, ③“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입양절차 정비, ④비밀 입양 관행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 ⑤중양입양감독원의 설립을 통한 입양제도 선진화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 변호사가 발제한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과거에 입양을 '촉진' 했던 정책 방향이 개정안에서는 원가족 및 출신 국가의 양육 보호를 국외입양보다 우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적용 대상을 '요보호 아동'에서 '원가정보 보호가 어려운 아동'으로 확대하고, 친모의 양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양숙려제도', 입양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법원허가제도' 등 새로운 제도 도입도 명시했습니다. 특히, 입양 절차에서 입양인의 정보 접근권을 '권리'로 보호하는 등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의 원가정보 보호가 최우선의 정책적 고려 대상이 되도록, 입양절차와 과정에서 아동 인권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법과 입양특례법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스크만 써도 참여가는 개정 집시법?

⊙ 「집회·시위의 자유와 법정책의 문제점」 토론회 공동주최

지난 12월 17일, 공감은 새사회연대와 공동으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법정책의 문제점」이라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는, '공감'에서 대리인으로 진행했던 헌법소원사건의 결정(헌법재판소 2009. 5.28. 선고 2007헌바22 결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은 집회 개념의 불명확성과 사전 신고제 및 형법적 규제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지만, 충분한 변론을 하지도, 유의미한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내지도 못했다는 자책이 있었습니다. 사후적으로라도 현재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라고 생각했고, 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근본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을 제시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주 아동의 교육권·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 제정 활동

대한민국은 UN아동권리협약에 가입 및 비준했고, 동 협약 제2조에서는 ‘아동은 자신 또는 그의 부모가 가진 인종·피부색·성별·언어·기타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협약에서 규정된 권리를 존중·보장 받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주 이주아동·청소년들의 교육권, 의료권, 거주권 등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대다수 이주아동 및 청소년들은 국내에서 미등록인 상태로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감을 비롯한 7개 단체가 2009년 4월 ‘이주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을 결성하였습니다. 관련 법 재개정을 기획 및 진행하고, 법안 작업과 토론회, 국회 공청회,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여성인권]

분류	제목	주관단체명
토론/발제	법의 날 기념 심포지움 ‘다문화가정-다문화가정의 정착과 미래’ 토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주민과 한국법제’ 발표	이주여성인권포럼
	결혼중개업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	한국소비자보호원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성매매방지법 시행 5주년 기념 워크숍 ‘성매매방지법시행 5년의 현황 및 향후과제’ 발제	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
	세미나 ‘다문화가족의 법률 관계’ 발제	젠더법학회
	공익인권포럼 ‘섹슈얼리티와 법, 그리고 인권’ 토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을 위한 포럼’ 토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조사	자유업종 성매매알선업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근거마련에 관한 연구용역최종보고	여성부
	탈북 여성의 남한 내 정착과정에서의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가족형태 다양화와 그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조사	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소외와 여성 그 현황과 미래적 비전III-성소수자와 소외’, ‘성소수자의 법적쟁점과 과제’ 발표	전남대학교 여성연구소
	가족형태 다양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적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프로젝트, ‘다문화가정 파트원고작성	법원행정처
	탈북 여성 인권실태조사 ‘연길-중조 국경지역 현지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성폭력에 대한 법률대응 매뉴얼 집필	대한변호사회 여성·아동인권소위원회	



[장애인권]

분 류	제 목	주관단체명
토론/발제	탈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탈시설정책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토론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민주노동당장애인위원회, 광정숙의원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토론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 보험차별 근거조항 상법 제732조 삭제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토론	광정숙의원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피해자보호시설 협의회 장애인권역 상담소 워크숍 발표	전국성폭력상담소
연구/조사	2009 RIKOREA 재활대회 '장애 & 시사비비' - '고용관련법률과장차법' 토론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탈시설정책위원회, 장애인연방법제정공동투쟁단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석 및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작업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점검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연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성년후견제도 사회복지 지원방안 자문회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기획소송단 활동	탈시설정책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용역사업, 사법분야모니터링 지표개발 연구참여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주와 난민]

분류	제목	주관단체명
토론/발제	'경제위기 하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	서울경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다문화사회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방안 모색 간담회 발제	이춘석 의원실
	제4회 아시아인권포럼 '이주민의 인권' 발표 및 토론	(사)아시아인권센터, 고려대학교국제대학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 국제노동기구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동아일보부설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
	'위장결혼으로 인한 한국국적상실자 구제를 위한 입법공청회, 개요 및 논평발제	김춘진 의원실
	포럼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과 출입국관리법상의 통보의무' 발표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Global Legal Clinic
	학술회의 '난민 : 그 개념과 함의' - '난민지위협약상 공포의 의미' 발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센터
	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국회간담회 토론	강명순 의원실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 워크숍 '젠더와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문화가족지원법제 검토' 발표	한국법제연구원
	고용허가제 5주년 기념 토론회 발제	국가인권위원회
	다문화사회와 인종차별 토론회 '인종차별금지법의 의의와 내용' 발제	전병헌 의원실,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민건강권 관련 입법공청회 토론	전현희의원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이주권리협약 쟁점 토론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개선방안포럼, 한국의 이주민 법제발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다문화사회 편입방안 제안토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 방안 -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 '미국의 미등록이주민 합법화 사례 및 논의' 발표	이주노동자/문화활동가 미누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연구/조사	전남대학교 교양교재 「인권의 이해」 중 '이주민과 인권' 부분 집필	전남대학교
	난민인권실태조사 모임	난민네트워크
	이주노동자 법제관련 간담회	성공회대학교 노동사회연구소
	이주민건강권 관련 개정법률안 전문가간담회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전현희의원실
	2009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및 보고서 작성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민 관련 사회권 규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대응 ; NGO번박보고서작성 등	사회권규약3차 번박보고서 작성 56개 ngo네트워크
	'외국인 법제의 정비와 비교법적 검토' 기고	조선대학교 법학논총
	재클린 비바(Jacqueline Bhabha) 하버드대 교수 초청 이주와 난민 간담회 개최	공감

[빈곤과 복지]

분류	제목	주관단체명
토론/발제	'보조금 횡령 근절 방안' 긴급토론회 토론	곽정숙 의원실
	OBS 우리시대, '철거민 유죄, 경찰 무죄' 검찰 수사결과 발표 논란 시사토론회 토론	OBS(경인방송)
	이주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 토론회 발제	이주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을 위한 '2009 기초생활 수급가구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토론	곽정숙의원실, 1017빈곤철폐의날조직위원회,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 공청회 발제	국회 아동청소년 미래포럼
연구/조사	해외입양인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해외입양제도개선모임
	이주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 법안전문위원회 회의	이주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실태조사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행동
	입양제도 선진화를 위한 TF 회의 참여 및 자문	보건복지가족부

[주민자치]

분류	제목	주관단체명
토론/발제	재보궐선거비용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 지역워크숍 발제	안양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백원우 의원실
연구/조사	14개 광역자치제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국제인권]

분류	제목	주관단체명
토론/발제	한국형 기업 인권 가이드라인 토론	국가인권위원회
	세미나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한 노트' 발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세계시민포럼 태국 내 미얀마 난민토론	경희대학교인류사회재건연구원, 참여연대국제연대위원회
	난민 국제 심포지움 '동아시아와 한국의 난민상황' 기조연설	일본난민협회
	UN인권이사회 세미나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및 특별절차 결정 및 권고 이행방안' 발표	외교통상부, 영국대사관
연구/조사	UN기업과인권 특별대표 아시아지역 자문 회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UN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이행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개발팀 회의참여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 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난민권리 네트워크
	남반구 난민 법률구조 네트워크(SRLAN) 회의	남반구 난민법률구조 네트워크
	국제구금연합(IDC)회의	국제구금연합
	UN난민기구 연례 NGO 자문회의(UNHCRAnnualNGOConsultations)	UN 난민기구
	UN인종차별철폐 회의(DurbanReviewConference)	유엔인권이사회
	아시아태평양지역 난민권리 회의(APCRR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난민권리 네트워크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UN특별보고관 초청 국제회의의 기획 진행	국제인권네트워크, 포럼 아시아
	제5회 아태변호사회(COLAP5) 국제준비회의(IPC) 참여 & 비사법적 살인 실태조사	아태지역 변호사회(COLAP)

[공익법 일반]

분 류	제 목	주관단체명
토론/발제	심포지움 '로스쿨의 현단계를 점검한다 - 변호사시험과 국고지원을 중심으로' 토론	법과사회이론학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제도발전실무협의회
	'강제실시제도 전문가 포럼' 발표	지식재산연구원
	'이명박 정부 1년의 인권현안 :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토론회 - '집시법 개정안' 관련 토론	한국앤네스티법률가위원회,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공익소수자인권센터
	'언론의 범죄피의자 얼굴공개와 인권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한국언론재단
	심포지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지위와 성격' 토론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공익인권법센터, 국가인권위원회독립성수호를위한 법학교수모임,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의약품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토론회'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신 대법관 사태가 보여준 법원개혁의 올바른 방향' 대토론회 발표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강대법학연구소, 법원공무원노동조합
	구금시설 트랜스젠더 처우관련 워크숍 토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통신비밀보호법, 불법권력도 보호대상인가' 토론	조승수 의원실
	'신종인플루엔자, 인권적 대처방안을 모색하다' 토론	국가인권위원회
	추계학술대회 '권력기관으로서의 검찰' 3부 '사건생산자로서 검찰-검찰의 권력기관화 및 담론권력의 문제' 토론	법과 사회 이론학회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이윤보다 생명' 토론	정보공유연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15주년 토론회 '레즈비언 상담의 길 찾기 : 다양한 갈래의 고민들' 발제	한국레즈비언상담소
	HIV 감염인 인권증진 토론회 발제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연구/조사	「시민, 활동가를 위한 형사질차 가이드북」 -경찰, 검찰심문부분 및 여성, 장애, 청소년부분집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Global Legal Clinic 개소식 참여 및 외부 자문위원 위촉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Global Legal Clinic
	국가인권위원회 「행정과 인권」 교재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집필	국가인권위원회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성소수자의 법적 쟁점과 과제' 원고 작성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여성인권

장애인권

이주와 난민

빈곤과 복지

주민자치

국제인권

공익법 일반

공익법교육·중개

공 익 변 호 사 그 룹 공 감

공감의 활동영역

공감의 활동영역 ★

여성인권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내·외국인 여성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법률지원·소송지원·법률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여성의 인권보호·복지증진·사회참여를 위한 법·제도 개선활동 및 연구조사 활동을 진행합니다.

☺☺ 탈북 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참여

탈북여성은 탈북 과정에서 가족과 생이별, 죽음, 폭력 등 상상하기 어려운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그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트라우마를 가진 상태로 남한에 입국합니다. 그러나 탈북여성은 남한에서 '잠재적 성매매 여성'으로 간주되거나 '열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취급받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은 인정받으나, 일상생활에서 동등한 시민으로서 인정받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탈북 여성들은 일상적 생활공간과 직업 현장에서 '탈북자'임을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접·간접적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임을 커밍아웃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장려금 제도와 같이 현행제도는 자신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밝히지 않을 수 있는 탈북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탈북여성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중국·북한 국경지역 방문조사 등에 참여하여 탈북 여성의 인권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대리모 유용·친권 침해받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민사소송 일부승소

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지만 이 남성의 전처에게 두 아이를 모두 빼앗기고 이혼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트남 여성은 신체에 대한 자기 완결권이라든지 인격권, 그리고 아이를 낳은 친모로서 행사할 수 있는 친권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사건입니다. 공감은 친권과 양육권, 인격권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은 이 베트남 여성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7월 법원은 이 여성에게 한국인 전 남편이 2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현지 결혼식 거행·이주여성 입국 전, 일방적 변심으로 입국을 거부한 한국남성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베트남 현지 결혼식 거행,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혼인신고 진행, 혼인 상대방인 베트남 여성이 입국하기 직전, 한국인 남성은 일방적 변심을 이유로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하여 혼인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미 가족과 친지들 앞에서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거행한 베트남 신부는 이유도 모른 채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공감은 동일한 피해를 방지하고 이주 여성의 피해를 배상하고자 베트남 여성을 대리하여 한국인 남성을 상대로 부당한 혼인해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녀들의 '상처받지 않을 권리'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은 한국으로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간 남편으로부터 입국 초청을 받지 못했다. 법적 절차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갈 날만 기다리던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이혼 통고였다. 그리고 중개업자를 통해 약 50만 원의 위자료가 전달됐다. 한국 중개업자를 통해 확인한 남성의 이혼 사유는 여성에게서 나는 악취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혼사유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곤혹스러웠다.

우리 사회에서 내국인간의 '결혼'이 상품화된 지는 오래됐다. 결혼을 통해 더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려는 미혼 남녀와 그 가족들은 고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중개업체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가족을 찾아 나선다. 얼마 전부터 국제결혼도 가세했다. 국제결혼에 대해서만 유달리 혼인의 진정성, 사랑과 결부된 결혼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쿨하게' 국제결혼도 당사자간의 비즈니스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한국인 남성-결혼중개업자-이주여성 간 게임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을 통해 국제결혼에 대한 공정 규제에 나섰다.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제'로 정하고, 중개업자에게 '표준계약서 작성, 허위·과장된 표시·광고 금지, 거짓 정보제공의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법은 기본적으로 '중개업자'와 '이용자'라는 '계약 관계'를 중심으로 권리·의무 관계를 끄집어내고 있다. 이때 '이용자'란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내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 정신에 따라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결혼 표준약관에서 이주여성이 중개업자와 '수수료를 내는' 한국인 남성 사이에 제공되는 서비스 대상으로만 취급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국제결혼 구조에서 누구보다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는 것은 이주여성이다. 불충분한 통역과 미인대회 선발식으로 대량 속성으로 이뤄지는 국제결혼 중개 구조 아래서 이주여성은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다. 중개업자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해 조기 혼인 파탄도 발생하고 있다. 혹 국내법 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 받으려 해도 계약서 한 장 손에 쥐고 있지 않은 이주여성이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란 어렵다.

이주여성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택한다. 그녀들은 '상처받지 않을 권리'로서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 받는다. 현재 국제결혼 구조 아래서 과연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선택이 종종 위장결혼으로 의심받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되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그녀들의 취약한 지위가 보강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 이를 통해 그녀들이 한국인 남성, 결혼중개업체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고 계약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감의 활동영역 ★

장애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활동을 합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자문과 소송지원 및 법률교육, 정신장애인 인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활동 및 인권교육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차별없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권의 사각지대, 정신장애인 인권을 말한다

⊙ 정신장애인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업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부터 정신장애인의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 수준의 정신장애인의 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가보고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공감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해온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작업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정신보건 담당자들의 관심을 촉구하여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펼쳐어와 신발이 뭐가 다르죠?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모니터링 작업

지난 2008년 4월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올바르게 정착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에서는 2009년 한 해에도 장애 차별과 관련된 지속적인 법률자문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기한 진정과 소송을 진행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관련 모니터링 사업에 적극 결합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미흡한 법제에 대한 입법개선작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이웃의 집단 괴롭힘 사건에 대한 형사 고소 진행

경기도 지역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가족을 상대로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이 이사갈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얼마 전 정신장애2급·정신분열증을 가진 가족구성원이 이웃과 시비가 붙어 발생했던 폭행사건이 이유였습니다. 폭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장애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과를 받아들였으나, 정작 다른 이웃들은 수차례 단지 내 방송을 통해 장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수차례 가정을 방문하여 정신장애 가족구성원을 정신병원에 입원·격리시킬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대책회의를 통해 10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이사갈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고, 결국 가족들로부터 정신병원에 입원 격리시키겠다, 위반시에는 이사를 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강요하였습니다.

공감은 이 사건을 장애를 이유로 한 집단괴롭힘 사건으로 규정하고 피해가족을 대리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수사 동행, 동일한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대응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복지시설을 넘어, 홀로서기를 꿈꾸다

⋈ 탈시설정책위원회 활동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대,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 전동휠체어 보급 등으로 장애인들이 집과 시설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늘었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장애인들, 특히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복지시설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며 생활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처럼 복지시설에서 장기간 거주한 장애인들에게는 소위 '시설병'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에서의 오랜 생활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이로 인해 어떠한 '꿈'도 꾸지 못하고 무기력과 체념의 습성을 갖게 됩니다.

'탈시설 정책위원회'는 장애인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모임입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시설 비리와 시설생활자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 활동에 나설 뿐만 아니라, '인간창고'라고 불리는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적 문제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중심의 사회복지정책을 극복하고, 지역중심의 '탈시설 자립생활'이라는 중장기 활동 및 연구 등 대안적 사회복지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탈시설 정책위원회 활동에 초기부터 참여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작업, 탈시설 소송 준비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정신장애인은 웬지 두렵고 위협하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 이들을 격리하여 한 곳에 수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재활치료를 받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으로 함께 살기는 꺼려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어느 신문에서는 “전국 각지에 돌아다니는 정신장애인이 500만 명 정도나 된다는데 정부는 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렇게 예비법범자들이 돌아다니는데 국가의 관리소홀로 범죄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냐.”고 하며 모든 정신장애인을 예비범죄자로서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사실에 버젓이 실리고 있다.



이처럼 정신장애인들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하여 훨씬 큰 편견과 차별 가운데에서 살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을 전전하며 살아가기 일쑤이고, 다행히(?) 수용시설이 아닌 사회에서 생활이 가능한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도 온갖 편견과 차별로 인해 사실상 자신의 집에 감금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은 통계에 의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강제입원비율이 12~15% 미만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강제입원 비율은 무려 91.6%에 달하고 있다. 평균 입원일수에 있어서도 이탈리아 13.4일, 독일 25일, 영국 52일 등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평균 입원일수는 267일에 이르고,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 무려 2,485일에 이르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는 높은 강제입원 비율과 과도한 평균입원일수 뿐만 아니라 시설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제투약, 부당한 작업치료, 과도한 격리·강박, 폭행, 사생활 침해 등의 인권침해,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 등의 인권침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선진국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격리와 시설보호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신보건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와 가족중심의 치료, 예방과 재활, 회복과 사회복귀위주의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회로부터 격리와 시설수용위주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입원·치료·퇴원과정에서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귀가 매우 저조하고, 치료가 되어도 돌아갈 거주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신장애인들은 특성상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정신장애인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신보건 관련자들이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인권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최근 개정된 정신보건법에는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에게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의무화시켰다.



지난 6월 18일~19일 이틀간 정신보건법상 의무화된 인권교육을 진행할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이 진행되었다. 전국의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중 종사자 인권교육 강사 희망자와 시·도 및 시·군·구 정신보건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종사자 인권교육 강사 희망자 등이 교육을 받았다.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외 기준에 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정신보건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들이 인권교육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을

을 기울인다면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부터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 치료 및 보호실태, 현행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재활 및 사회복귀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전국적 토론회, 선진국의 정신보건정책과 실태에 관한 연구조사 등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수준의 정신장애인의 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가보고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고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정신보건 담당자들의 관심을 촉구하여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 감 의 활 동 영 역 ★

이주와 난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특히 출입국과 관련하여 단속·보호·강제퇴거 절차상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과 난민신청자들이 적절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도시의 시선이 보지 못하는 '상처'

⊙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임금지급청구소송 승소

모두 떠나버린 농촌으로 가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

결혼 이주여성이 그렇고,

일손이 없는 텅 빈 들판과 하우스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그렇다.

그렇게 가장 토착적인 지역 농촌에서,

가장 국제적인 '풍경'과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농촌은 하나의 '풍경'이다.

그러나 그 풍경 속의 관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도시의 시선이 보지 못하는 '상처'들이 있다.

태국 사람인 A씨는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해 전남 영암군의 한 화훼농원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오전 7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꽃 등의 식물을 관리하고 포장하기로 계약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마감시간이 돼도 일이 끝나지 않아 매일 초과근무를 해야했고, 휴일에도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 지급된 임금은 기본 급인 78만 원이 전부였고, A씨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16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임금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제기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모두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합니다. A씨가 체결한 표준계약서에는 임금란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하단에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의 경우 동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함”이라는 기재가 있었습니다. 1·2심 법원은 이 하단의 기재를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공감'은 상고심 단계에서 이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초과근로시 정규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인데, 토끼몰이식 단속이러니

◉ 김해 외국인 상점 출입국단속 국가배상 사건 승소

공감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이주노조 등 여러 이주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법적 근거 및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출입국단속반원들의 길거리 불심검문의 문제점, 주거·사업장 등 무단진입 단속의 불법성, 불법적인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와 인권침해에 대하여 끊임 없이 문제제기를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자유의 중대한 제한인 출입국단속반원들의 단속행위, 연행, 구인, 구금과 관련하여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적법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공감은 이처럼 폭력적이고 위법한 출입국 단속관행을 개선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여러 이주인권단체와 함께 2009년 3월경, 국가를 상대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준수하지 않은 출입국단속반원들의 단속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쉼터나 음식점에 대하여 관리자가 임의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상 헌법상 일반원칙인 영장주의가 적용이 되어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압수, 수색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출입국단속반원들이 주거권이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음식점 등에 무단 진입하여 단속한 행위는 관리자의 주거권 및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무차별 단속은 이제 그만

◉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발의

2009년 5월 25일 국회의원 24명(대표발의 황우여 의원)이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공감은 2008년부터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국제앰네스티, 기독교법률가회,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유엔난민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가) 등과 함께 '난민NGO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난민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난민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성과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고, 서울지방변호사회, 국회인권포럼의 토론회를 거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회에 난민법 제정안을 공식 입법청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난민법 제정안이 발의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난민인정절차의 절차보장의 강화, 난민신청자의 합법적인 생계 보장, 난민의 권리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14에는 국회의원 11인(대표발의 이춘석 의원)이 '출입국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공감은 2008년 외노협, 이주인권연대, 이주노조, 민변 등과 함께 '이주정책개선모임'을 구성하여 비교법적인 연구조사와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이 개정안이 이춘석 의원 주치의 토론회를 거치고 일부 수정보완을 통해 발의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단속, 보호, 강제퇴거 과정에서는 실체적·절차적 보장, 비범죄화와 비구금화, 출입국관리행정에 과도하게 부여된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누 씨의 꿈

“오늘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마치 18년 전 자다가 지나간 꿈을 꾸고 일어난 것 같은 느낌처럼, 아니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얼음으로 얼었다가 몇백 년 후 꺼내진 것 같은 느낌처럼... 많은 것들이 변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달 23일 강제추방 당한 미누드 목탄. 한국식 이름 '미누'로 더 많이 불리는 그는 추방당한 다음날 아침, 한국에서 보낸 18년이 마치 지나간 꿈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미누 씨는 18년 동안 한국의 봉제공장 등지에서 이주노동자로, 이주노동자밴드 '스탑크랙다운'(StopCrackdown, 단속을 멈춰라) 보컬로, 이주노동자방송국 MWTV 미디어활동가로 살아왔다. 그는 이주민이 출연하는 최초의 토크쇼를 만드는 등 미디어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의 목소리들을 전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스스로 희망이 되어주고 싶어 했다. 이제는 모국어인 네팔어보다 한국어가 더 편하다는 그였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 18년 동안 같은 하늘 아래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한국사회로부터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온전한 평가를 받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한국정부에게 그의 존재와 삶은 18년의 '불법체류' 일 뿐이었다. 그는 기습적인 강제추방을 당하였다. 법무부는 그에게 작별인사를 할 시간도,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회도, 법원의 결정을 받을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다.

그가 표적단속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면회 갔을 때, 외국인보호소 수용복인 파란색 체육복을 입고 멍쩍어하던 그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끌려온 것에 대한 모멸감,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것에 대한 배신감, 자신의 일로 동지들을 고생시키는 것에 대한 미안함, 자신의 존재와 삶이 무가치한 것으로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강제추방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는 승소할 확률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통하여 싸우고 싶다고 했다. 그는 그것이 실패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의 마지막 선물도 용납하지 않았다.

강제추방은 미누 씨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그가 한국사회에서 맺어온 수많은 인연과 관계들, 삶의 기반들을 하루아침에 현실이 아닌 '꿈'으로 만들어 버렸고, 이주민으로서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는 그의 꿈은 '불법'이 되어 버렸다. 지금도 한국사회 안에는 수많은 '미누'들이 살고 있다. 그들을 모두 단속하고 가두고 강제추방할 것인가.

공감의 활동 영역 ★

빈곤과
복지

홀리스, 도시빈민 등 빈곤계층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법·제도 개선연구를 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 및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단체에 대한 법률지원, 법률교육 및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에 관한 상담, 실태조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보고서, 이의 있습니다!

UN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정부보고서 심사에 대한 NGO 반박보고서 작업

공감은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UN 사회권위원회)의 3차 한국 정부보고서 심사에 대비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NGO 반박보고서(NGO 반박보고서)'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공감은 2008년 'NGO 약식보고서' 작업에 참여한 데 이어 2009년에는 공감을 포함한 56개 NGO들의 'NGO 반박보고서' 준비모임의 실무를 맡았으며, 총론과 주거권 영역의 보고서 작업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 작업은 사회권의 각 영역별 NGO들이 한국의 사회권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3차 보고서에서 사회권 현황을 왜곡하거나 잘못 보고한 부분을 밝혀내고자 하였습니다. 최종 NGO 반박보고서는 10월 UN 사회권위원회에 제출되었고 UN 사회권위원회는 11월 최종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용산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 용산참사 관련 활동

공감은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가 발생한 직후부터 사망한 철거민의 유가족 면담 및 법률 자문, 구속된 철거민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구속적부심사청구시 변호인 활동, 이후 용산참사 철거민 공동변호인단의 일원으로서 재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9년 9월까지 형사기소된 철거민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형사기소된 철거민 변호 외에도 '검사가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처분이 위헌임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대리, 수사기록 열람·등사명령을 불이행한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대리를 맡았습니다.

이밖에도 공감은 용산참사의 해결을 촉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용산참사 국민법정'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공감은 용산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찰의 위법한 철거민 진압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각종 개발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업시행자와 건설사의 개발 이윤을 극대화하는 한편 원주민들의 최소한의 주거권과 생존권은 도외시키고 배제한 채 무분별하게 확장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공감은 개발사업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의 주거권과 생존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연실적'인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라!

⊙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행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 참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아직도 빈곤심화 등의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곤층을 위해서는 기초보장법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의 개선,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공감은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행동 '기초생활수급권자 조사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개선 요구안 검토 및 결과발표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노숙인쉼터는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여기, 노숙인쉼터가 하나 있다. 쉼터에 있는 아저씨들은 대개 IMF 사태 이후 가정과 직장에서 떨어져 나와 길거리 노숙(露宿)을 하기도 하고 이곳저곳 시설을 떠돌기도 하다가 사회복지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이 쉼터에 들어왔다. 아저씨들은 쉼터에서 먹고 자며 매일 일을 하러 나가고, 일하여 번 돈을 꼬박꼬박 가족에게 부치거나 저축을 한다. 저축한 돈이 200만 원 남짓이고 3개월 이상 계속 일자리가 있으면, 서울특별시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신청을 할 자격이 된다. 이 때문에 아저씨들은 먹여주고 재워주는 이 쉼터를 발판삼아, 쉼터를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자립하기 위해 별이가 되는 일을 찾아 나선다. 쉼터에는 5년, 10년씩 노숙인보호사업을 해 온 사회복지사들이 있어 아저씨들에게 금전 관리, 건강과 의료, 심리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쉼터가 제공하는 숙식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아저씨들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아저씨들은 '여기가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오랜 홈리스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자 안간힘을 쓴다.



이 쉼터를 좀 더 넓고 쾌적한 시설로 옮기기 위해 적당한 건물을 찾던 중 한 건물을 발견하게 된다. 아저씨들에게 좀 더 편한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겠다 싶은 곳이다. 근처에는 여자중고등학교가 있고 주택들이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평온한 동네이다. 쉼터를 운영하는 재단은 그 건물을 사들이고 관한 구청장의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건축법상 사회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어 있음)로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고서 쉼터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추가하는 공사를 모두 마치고 사용승인을 얻었다. 이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만 하면 쉼터는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자, 여기서 문제. 노숙인쉼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은 근처의 학교 선생님들이 한 일은 무엇일까?
 ①번, 학생들에게 한국 사회에서 홈리스가 급증하게 된 배경, 소수자로서의 홈리스의 실태, 홈리스를 돕는 비정부단체들을 설명하고,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②번,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학년 전 학급의 학생들에게 구청에 제출할 진정서 서명용지를 나누어 주고 부모님 두 분에게 서명을 받아오라고 지시한다. 선생님들도 모두 합심해서 진정서에 서명을 한다. 진정서에는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것만을 보고 배울 권리가 있으며 어른들에게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0.001%라도 있다면, 통학로에 위치한 노숙인쉼터가 운영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라고 쓴다.

다음 문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허가하고 건물을 사용하라고 승인한 구청장이 쉼터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를 받은 후 한 일은 무엇일까? ①번, 학교 측과 동네 주민들이 홈리스에 대한 편견을 깨뜨릴 수 있도록 쉼터가 하는 사업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아저씨들이 한 동네 주민으로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②번, 학교 선생님·학부모와 주민들 도합 6천 명이나 반대 진정서를 내었으니 진정서의 서명이 위조되었는지, 진정서를 모은 경위가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쉼터 운영을 막아야 하므로 진정서를 접수한 지 3시간 만에 곧바로 신고서를 되돌려주고 신고 수리를 거부한다.

문제가 너무 쉬운가? 정답은 모두 ②번이다. 쉼터를 운영하는 재단을 대리하여 구청장의 신고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나는 아저씨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기 위한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구청장이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에는 홈리스에 대한 편견, 특히 “노숙인이 여자청소년에 대한 잠재적인 성폭력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숙인쉼터의 설치, 운영을 허용할 수 없다”는 편견이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전시되었다. 구청장의 소송수행자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법정에서 행한 구술변론에는 그 편견이 날 선 언어로 반복되었다. 과연 그런가? 중년 남성 수십 명이 가족과 떨어져 집단거주하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쉼

터는 동네 주민과 여학생들에게 그토록 위협적인 시설인가? 그 모든 말들은 단지 근거 없는 공포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불과한 아저씨들을 배제하기 위한 허언이 아닌가?

다행히도, 법원은 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 노숙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에서 비롯된 막연한 사고의 가능성에 기초하여 야기된 학교 측과 지역주민의 집단민원만으로 이 사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구청장이 원고(쉼터 운영 법인)의 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이다. 마지막 문제가 남았다.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든 구청장이 한 일은 무엇일까? ①번, 법원에서 신고거부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취소하였으니 판결을 받아들이고 쉼터에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②번, 민원을 낸 학교 선생님, 학부모, 동네 주민들이 재판이 진행된 9개월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고거부는 적법한 것이니 고등법원에 항소한다.

지금 나는, 다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건은 항소심 승소(구청의 항소 기각)에 이어 구청 쪽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이 2009년 11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노숙인쉼터 쪽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공감의 활동영역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들을 연구하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들의 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발의·주민감사·주민투표·주민소송·주민소환제도 활동에 대한 법률자문, 법률교육 및 매뉴얼작업, 소송지원 활동을 진행합니다.

위법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주민소송 승소

공감은 2008년 도봉구/금천구/양천구 주민들을 대리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위법하게 지급된 의정비 반환을 위한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8년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할 뿐더러 법령에 정한 절차와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2009년 5월 20일 서울 행정법원은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민소송은 2006년 주민소송 제도가 시행된 이래 승소한 첫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노력으로 잘못된 지방자치 행정을 바로 잡고 수 억원에 달하는 지방재정 손실분도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주민소송 가이드북 '주민소송 사용발간서' 발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그간 주민소송의 지원활동의 성과를 모아 사례로 살펴보는 주민소송 가이드북 「주민소송 사용설명서」를 기획,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주민발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주요 주민직접참여제도에 관한 실무 매뉴얼로서 예산감시네트워크 주민참여법률지원단이 2006년 발간한 '주민참여가이드북'의 후속 기획으로, 그동안 진행된 주민소송의 경험과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유급제의 의미

지방의원에 대한 보수 지급방법 중 하나인 유급제는 무보수의 반대 개념이다. 하지만 무보수라 하더라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2006년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실시되기 전,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경우처럼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그 보조활동을 위한 ‘의정활동비’와 ‘여비(공무원여행경비)’, 그리고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 세 항목 중 앞의 두 항목은 그대로 둔 채 회기수당만을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급 형태의 월정수당으로 바꾼 것이 2006년부터 실시된 유급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언론에 비친 우리 지방의회의 모습은 참담하기까지 하다. 지역별로 특정정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직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토착세력의 이권개입, 의회의 돈봉투사건으로 인한 의원들의 무더기 기소, 의원들의 향락외유, 의회회장의 뒷돈선거, 성접대 의혹 등 각종 추문들이 끊이지 않는 반면, 의원 1인당 평균 조례발의 건수는 연간 1건 정도에 불과하고 그조차도 의정비, 상해 보상금 등 지방의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거나 회의운영, 위원회 조례 등 의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절반이 넘는 수준이라 한다. 이쯤 되면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지방의회가 왜 필요한지 근본적 회의를 품을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적지 않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유급제를 실시한 이유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추세에 부응해 지방의회의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의회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참신한 인재의 의회진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나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정서를 반영해, 의회의 주민대표성을 증대시키고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들면서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및 감시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08년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그런데, 2007년 하반기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주민의 여론과 법령에 정한 기준을 무시한 채, 지방의원 의정비를 대폭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정하지 못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왜곡된 방법의 주민 의견 수렴, 법령에서 정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재정규모, 물가상승률, 의원 활동실적 등)의 무시, 지방자치라는 명목하에 불법으로 지방의원 의정비를 대폭인상 하려한 것이다. 실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를 보면 도봉구민의 소득수준은 서울 지역 자치구 중 상대적으로 하위에 속하고, 의정활동 실적은 2006년도 및 2005년 대비 오히려 감소했고,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2.5%(2008년), 물가상승률은

2.2%(2006년), 근로자임금상승률은 5.4%(2007년)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2007년 도봉구 예산은 재정 자립도가 34.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번째로 순위가 낮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의 정비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은 기준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월정수당을 95.2%(2,244만 원에서 4,490만 원으로) 인상해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을 포함한 의정비 합계 59.9%(3,564만 원)에서 5,700만 원)를 인상했다.

주민소송의 제기

위와 같이 부당한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맞서 도봉구, 금천구, 양천구 주민들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조례개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의 적법 여부, 월정수당 인상액의 적법여부 등에 관한 주민감사청구를 하여 의정비조례 개정에 실체상·절차상 위법이 있었음을 확인한 후, 월정수당 지급으로 낭비된 자치구의 재정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각 구청장들을 상대로 구의원들로 하여금 부당 인상된 의정비 금액만큼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주민소송의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시행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편향되게 할 위험이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항에 정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결정할 때에도 법령에 정한 고려사항을 충분히 숙고해 재량판단을 한 후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3개 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각 구의회 의정비 조례 역시 위법·무효이다. 따라서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각 구의원들이 개정된 조례에 의해 수령한 인상된 급여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익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도봉구의회 의원 14명이 각 2,100여만 원, 양천구의회 의원 18명이 각 1,900여만 원, 금천구의회 의원 10명이 각 2,200여만 원, 총 8억 7천여만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도적 개선

현재 위 주민소송들은 항소심 중에 있으나, 이 사건들을 계기로 ‘의정비 기준액 제시’와 ‘결정절차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의무화 했고,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수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방의원 1인당 주민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제시했다. 위 산정방법에 의할 경우, 2009년 도봉구의회의원 월정수당 기준액은 2,164만 원으로 2008년 월정수당과 비교할 경우 50%이상 삭감된 금액(차액 -2,216만 원)이다.

공감의 활동영역 ★

국제인권

국내 인권상황과 관련된 국제인권법 및 외국법 연구조사, 유엔인권시스템의 활용, 국제적인 공익변호사 네트워크의 강화 및 공동활동, 국제적 인권문제에 대한 직·간접적인 개입 등의 활동을 합니다. 특히 실천적인 연구조사와 관련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활동하고 국내·외적 인권상황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노력합니다.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UN특별보고관 초청 워크숍 기획 및 진행

공감은 2009년 10월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과 함께 하고 있는 국제인권네트워크를 통해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초청 행사를 기획, 진행했다. 10월 13일에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의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도전'을, 10월 14일에는 <국제워크숍>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 및 유엔특별절차의 활용'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개인과 단체들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실태를 알리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의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이 행사에는 국내 인권활동가를 비롯해 사이버 상의 표현의 자유 억압의 피해자였던 '미네르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영화감독, 언론인이 참석하여 각 국가의 인권 실태를 알렸다. 뿐만 아니라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엠네스티, 포럼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있는 국제 인권활동가와 전문가도 참석했다.

❖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NGO 대응모임

공감은 2008년부터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NGO 대응모임에 함께하며 NGO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의 활동을 해왔다. 이 위원회는 2009년 11월 한국 정부의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의 이행여부에 대해 심의한 뒤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하였다.

지난 2001년 이후 8년 만에 이뤄진 이번 심의에서는 용산참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노동권 탄압 등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전반의 문제점들이 낱알이 거론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끊임없이 제기한 사회권 이슈들이 거의 대부분 다뤄졌고, 권고내용에도 반영되었다. 공감은 함께 해온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부가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을 수용하고,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지속적인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제5차 아시아태평양변호사회의 국제준비위원회 참가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민변의 이재정, 조현주 변호사와 함께 2009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 5차 아시아태평양변호사회의 국제준비위원회(COLAP5 IPC) 한국대표로 참가했다. 한국대표단은 제5차 COLAP이 지역의 모든 인권 및 공익변호사들에게 열려있어야 하고, 주제들이 가능한 구체적이어야 하며, 이주민의 권리와 여성의 권리에 관한 특별한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편 기자, 변호사 기타 민간인 등 약 60명이 사망한 필리핀 남부에서 벌어진 마긴다나오(Maguindanao) 학살과 관련하여 필리핀, 호주, 일본 변호사들과 함께 필리핀 통합변호사회(Integrated Bar of the Philippines: IBP) 회장 및 이사진과 면담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대법원을 방문하여 Reynato S. Puno 대법원장과 면담하고, 법무부에서는 Ric Blancaflor 법무부차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몇몇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살 사태에 대한 조속한 진상 조사 등을 촉구했다.

국경을 넘는 인권활동

⊙ 아태지역난민권리회의 참가

10월 6일부터 3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회 아태지역 난민의 권리 회의(APRRC2)에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 황필규 변호사, Brittan Heller 펠로우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회의로서, 2008년에는 황필규 변호사가 참석하였는데 그 회의를 통해 아태지역난민권리네트워크(APRRN)가 구성되었고, 황필규 변호사는 네트워크 운영위원회 부코디네이터와 동아시아그룹의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동안 APRRN은 ① 버마의 소수민족인 로힝가 난민의 인권 상황에 관한 두 번의 성명서 발표, ② 유엔난민기구 집행 이사회 프로그램위원회의 아태지역 성명서 제출, ③ 스리랑카 난민 상황에 대한 대응, ④ 유엔난민기구 NGO 자문회의 참가 아태지역 NGO 지원, ⑤ 유엔난민기구와 공동사업, ⑥ 법률지원과 구금 관련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얼마 전 영국의 변호사들로부터 영국에서 탈북자들이 난민신청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을 요청하는 몇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요청 내용의 요지는 '탈북자가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경우에는 비록 박해의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남한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난민협약상의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영국 당국의 주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독일과 호주 판례의 경우 위와 같은 논거로 탈북자의 난민 지위를 부정하고 있는데, 멕시코와 벨기에의 경우에는 탈북자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고, 영국에서는 상반된 결정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탈북자의 난민 여부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로 중국이나 태국처럼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이들을 일률적으로 경제적 이주민으로만 바라보는 입장에 대한 비판에 관한 것이었다. 영국과 같이 난민인정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국가에서의 탈북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난민협약 상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제3조), 「국적법」은 '출생한 당시에 부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대법원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한 자도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확인하고 있다(96누1221).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탈북자지원법')은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난민의 개념에 바로 형식적으로 대입시키면 모든 탈북자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난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문제는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탈북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남한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남한의 입장 혹은 남한의 국내법을 우선시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탈북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인가. 난민협약의 취지에 입각했을 때는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해봤는데 북한 인권을 다루는 분들은 탈북자의 난민 지위에 관하여 의외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주로 공격대상으로서의 가해자 중심의 논의는 아니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정원 등의 관련 업무 담당자 등과 접촉을 하거나 접촉을 시도해보았지만 생각을 정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난민협약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국적국의 보호'에서의 '국적'은 자동적이고 온전한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탈북자지원법」은 그 적용대상을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정하고 있고 그 기본원칙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탈북자지원법」상 보호신청 및 결정 등의 절차가 법리적으로는 탈북자들의 남한 국적 인정 여부와 무관하다고는 하지만 재외동포나 재외국민 관련 법령이 탈북자에게는 바로 직접 적용되지 않는 점만 보아도, 보호와 관련된 절차는 사실상 탈북자들의 남한 국적 확인에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탈북자의 남한국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중국적이 아니라 북한의 국가성의 부인 및 북한정권의 반국가단체성의 승인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그리고 북한국적 보유의 입증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조건부 국적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탈북자에게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90일 이내(평균적으로는 30일,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의 합동신문이라는 사실상의 구금상태, 12주 이내의 하나원 교육이라는 사실상의 준구금상태를 견뎌내야만 하는 추가적인 요건이 요구된다. 심지어는 국방부훈령인 「군 합동신문소 운영 훈령」(제1084호, 2009. 7. 30.)은 '각급 기관의 장'이 언제라도 탈북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이들 탈북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남북한 모두와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 영국이 북한의 국내법을 부정하고 남한의 국내법만을 근거로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타당한 것일까. 남한 국익의 관점을 떠나 난민의 관점과 인권침해 피해자로서의 탈북자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위와 같은 절차의 강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원치 않는 탈북자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왜 다수의 탈북자들은 남한에 오기를 원하지 않는 것일까. 일부 외국의 난민신청사건에서 탈북자들은 '남한에서 북한공작원들에 의해 피해를 당할 가능성', '북한에서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 '남한사회에서의 차별대우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지만, 이것이 이들의 생각의 전부를 이야기해 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에 흥분하기 이전에 탈북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무엇이 진정 이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인가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북한 인권'에 진지하게 접근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재일 '조선'적의 입국을 어하라!

○○ 조선적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1952년 이후, 재일조선인들에게는 세 가지 선택의 길이 주어졌다. 북한행, 한국행, 무국적자로 일본 거주. 한일국교 수립 이전인 당시의 상황에서는 한국행을 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북한행을 선택하지 않은 상당수의 재일조선인들이 '조선적' 무국적자의 삶을 선택했다.

무국적자로서 여권이 없는 '조선적'은 한국 방문시 외교통상부가 발급하는 임시여행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일본 주재 한국 영사관은 임시여행증명서 발급과정에서 한국 국적 취득 의사를 묻고, 국적 취득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그 사례로 국내 학술제에 초청된 일본 대학의 연구원이 '조선적'이라는 이유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의 의뢰로 공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외교통상부는 주권 국가의 여행증명서 등 발급 여부에 관한 행위는 무국적자의 입국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주권적 행위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투명한 사회, 시민의 진정한 '알권리'를 위해

○○ 정보공개센터와 법률지원협약

투명사회에 한걸음 다가가기 위한 방안으로, 공감은 정보공개센터와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감은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향후 1년간 3건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기획소송 등 법률지원 업무를 진행하기로 협약하고, 첫 기획소송으로 정보공개수수료를 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항이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에이즈 치료제, 한국에선 '약'이 아니라 '금'

⊙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푸제온은 에이즈 치료를 위한 '필수 공급약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사인 제약회사 로슈는 푸제온의 식약청 허가 이후 4년이 넘게 국내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슈가 정부에서 약값을 연간 2,200만 원으로 책정하지 않으면, 푸제온을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중단 사태 해결을 위해 모인 인권사회단체들은 그동안 많은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급 거부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고, 스위스의 로슈 본사를 압박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푸제온은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상 강제실시 뿐이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에 있어서 강제실시를 중요한 부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인권사회단체들은 푸제온 공급의 최후의 실마리로서 강제실시권을 청구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2008. 12. 23. 한국HIV/AIDS 감염인연대 KANOS와 정보공유연대 IPLeft 명의로 강제실시를 청구했고, 공감은 이 사건 청구서 작성을 대리했습니다. 아쉽게도 지난 6월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구과정에서 푸제온에 대한 무상공급 결정이 이루어졌고, 정부에 의한 특허 강제실시의 요건을 완화하는 특허법 개정(조소수 의원 대표발의)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아스피린이나, 아달린이나?

#1

“아내는 한 달 동안 아달린을 아스피린이라고 속이고 내게 먹었다.” 이상(理箱)의 소설 「날개」에서, ‘아내’는 자신의 경제 행위(매춘)가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면제(아달린)를 치료제(아스피린)라고 속여 ‘나’에게 먹인다.

아스피린, 아달린? 이상의 이 질문을 다시 고쳐 묻는다. 집시법은? 단언컨대, 민주주의적 열정을 왜곡하고 잠재우는 마취제, 아달린이다. 치명적인 것은 그 ‘아달린’이 ‘아스피린’ 통에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집시법이 열정의 과잉과 남용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해열제(아스피린)라고 속아왔고, 속아주었다. 그러나 오늘의 집시법은 1962년의 출생부터가 민주주의와 그 열정에 대한 공포의 산물이었다.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우리는 그 실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야간집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시민들이 집시법의 마취제(아달린)적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중요한 승리였다. 그러나 야간집회에 관한 현재의 결정이 집시법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되지는 못한다. 우리의 질문은 이 결정 이후를 기점으로, 다시 본격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아스피린, 아달린?

#2

지난, 12월 17일, 새사회연대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공감)이 공동주최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법정책의 문제점」이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는, ‘공감’에서 대리인으로 진행했던 헌법소원사건의 결정(헌법재판소 2009. 5.28. 선고 2007헌바22 결정)과 관련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은 집회 개념의 불명확성과 사전 신고제 및 형법적 규제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지만, 충분한 변론을 하지도, 유의미한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내지도 못했다는 자책이 있었다. 사후적으로라도 현재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애프터서비스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라고 생각했고, 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집시법의 근본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을 제시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토론회에서 발표자 김종서 교수는 현재 결정에 대한 비판점 검토를 진행해주었다.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 : 집회 개념, 신고제의 문제점과 현재 결정의 비판」이라는 발표를 통해, 현행 집시법상 집회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기자회견과 같이 언론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행위까지 집시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제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현재가 집시법의 한계에 대해 눈을 감은 것”이라는 비판을



제시했다. 또한 집시법의 구조가 노동조합법의 설립신고제도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고 그 취지도 거의 동일한 것으로서,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소극적 요건을 확대하는 방향을 개선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창수 대표는 집회의 규제와 민주주의의 진전과 관련된 함수관계를 규명하는 입론적 시도를 해주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이라는 발표를 통해, 각국 대사관을 통해 확보한 집회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였다.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우리의 집시법 형식을 '자유-규제 통합형' 국가로 분류하고, 다른 아시아, 유럽 국가와 달리 정치적 정당성과 결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결과적으로는 후진국형에 속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발표에 대한 토론에서, 윤영철 교수와 김도현 교수는 현행 집시법을 규제법에서 보장법으로 전면 개정하거나, 또는 전면 폐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3

마취제로서의 현행 집시법이 수행하는 기능은 분명하다. 정치를 사유화(私有化)하는 것, 민주주의와 정치를 직업적 정치가들의 수준에 묶어놓고, 소수의 목소리와 열정을 잠재우는 것이다. 집시법이 오늘의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해악이 큰 만큼, 그 근본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그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오늘의 현실에서 기획되어야 할 과제다. 당장의 실현가능성을 이유로 시급한 문제의 기획을 외면하는 것은, 정치공학에 불과할 뿐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의식은 더 긴 호흡으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 방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원론적으로 제기되었고, 또 현재 결정의 반대편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토론회 주최의 계기가 된 현재 결정에서 조대현 재판관이 제시한 반대 의견을 옮겨놓는다.

2인 이상이 옥외에서 공동의 목적으로 모이기만 하면 어떠한 집회인지 상관없이 언제나 사회질서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옥외집회라는 사실만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기본권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 의사표현의 자유로서 우리의 헌법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타인의 법익이나 사회질서를 침해할지도 모른다는 추상적 염려가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집회의 목적·시간·장소·인원 등에 비추어 사회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할 개연성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회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사회질서를 해칠 개연성이 확실한지 여부도 묻지 않고 집회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공감의 활동 영역 ★

공익법교육 ·중개

공감은 법조인, 예비법조인, 학생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중개하고, 공익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익법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생, 예비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인턴십 제도와 인권법 캠프 등을 진행하며, 로펌이나 법조인이 공감의 활동에 재정지원 또는 직접 참여하도록 하거나 공익단체를 중개하여 공익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 예비법조인 대상 공감 인권법 캠프 개최

공감은 예비 로스쿨생과 예비 사법연수원생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 공익인권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양하고자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제2회 공감인권법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인권의식과 공익법 활동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현실에서, 나와 다른 생각·사람·사물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의 의미있는 변화를 모색하고자 캠프를 기획하였습니다. 공감은 앞으로도 매년 예비법조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법캠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로스쿨 공익법 특강 시리즈

2009년에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로서의 로스쿨이 전국의 25개 대학에서 개원하였습니다. 법조인 양성 방식이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되어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감에서는 전국 25개 로스쿨에 공익인권법 특강을 제안하여 소수자 보호와 변호사의 역할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의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감 펠로우십 프로그램

국내외 변호사, 학자, 활동가 등 전문가들이 공감과 안정적이고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6개월 이상 활동하는 제도로서, 2009년에는 미국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브리튼 헬러 씨가 9월부터 공감에서 펠로우로 결합하여 국제인권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튼 헬러 활동소감



“나의 전공은 국제인권법인데, 관련 일을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아프리카 중부, 유럽, 그리고 남미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한국에 오기 전에 특별한 기대를 품고 왔다. 바로 한국의 인권단체들의 활발하고 긴밀한 커뮤니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가는지, 그리고 사회 안에서 인권을 우선순위에 놓기 위해 어떻게 싸워가는지 보고 싶었다. 또 개인적으로는 사회권과 경제권, 그리고 시민권을 인권으로 개념화하는 비전 있는 변호사들을 두고 싶었다. 공감활동은 나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처음에는 공감의 활동 영역이 매우 넓어서 인상적이었다. 활동 첫 달,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무기행정정금 반대시위부터 해외입양아에 대한 법률 개정안 발표회까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인턴들과 유엔 사회권위원회 NGO 보고서 번역을 진행했고, 그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내가 쓴 이주민의 노동3권 관련 보고서를 번역하여 대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준비했다. 공감활동을 통해 책으로는 접할 수 없었던 한국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다. 나는 한국의 법과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들과 인권운동가들의 열정을 본다. 공감에서 공익변호사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새로운 모습과 미래가 열리는 것을 보고 있다. 공감에서 그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은 내겐 큰 영광이다.”

:: 공감 인턴 프로그램

개념

- 정시인턴 | 정기적으로 모집되어 일정 기간 동안 공감 구성원들과 함께 공감의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원활동가
- 수시인턴 | 수시로 모집되어 협의된 기간 동안 협의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원활동가
- 특별인턴 | 외부 의뢰 또는 외부 프로그램(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수습, 전문가연수, 직장체험프로그램, 개별대학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모집되어 그 의뢰 또는 프로그램에 의거한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자원활동가

공감 인턴 프로그램



활동분야

- 국내 법률·문헌 연구조사
소송 지원 / 법제·정책 개선 / 법률교육·매뉴얼 / 관련 법 문헌 연구조사 및 업무보조 등
- 해외 법률·문헌 연구조사
해외문헌 리서치 및 업무보조 /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관련 통·번역 / 비교법, 국제법 연구 등
- 홍보기획
공감활동소식 취재 및 홍보 / 홍보웹사이트 운영 기획 및 관리 / 다양한 홍보방안 연구 등
- 운영기획
기부자관리 운영업무 / 정보문헌 관리 / 송무지원 / 모금기획 및 운영보조 등

정시인턴 활동기간

- 상반기 | 3월-8월 (6개월간 200시간 이상)
- 하반기 | 9월-2월 (6개월간 200시간 이상)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공감과 함께한 행복했던 6개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려 지원한 인턴

작년에 공감의 인권법 캠프에 지원했다가 고배를 마셨고, 올해 인권법 캠프는 아예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 합격생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말에 나는 또 눈물을 떨굴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공감과 내 인연은 이 정도인 것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공감과 소원해졌을 때 우연히 공감 9기 인턴 모집을 알게 되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학생인 내가 감히 공감의 인턴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과연 8월에 치르는 법학적성시험을 앞두고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을 인턴생활을 하면서 보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 사실 망설이기도 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를 정당화시키는 핑계를 대면서 실천보다는 말과 생각만 앞서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는 않았다. 그동안 항상 '공익' 과 '인권' 에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꼭 공익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해왔지만 그냥 그 뿐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단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정신적·물리적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했지, 실제 현재 구체적인 실태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바빠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로 나 자신의 의지박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려고 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낙방하더라도 나 자신에게 몇몇할 수 있다면 후회하지 않으리란 마음으로 인턴에 지원했고, 그야말로 천운으로 다른 훌륭한 동기들과 함께 공감 9기 인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모두에게서 소외된 곳을 찾아가는 공감

인권과 공익을 소리 높여 부르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감에 있는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내가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도 많구나' 하는 반성이었다. '공익' 과 '인권' 이라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 장애인권, 이주민인권, 성적소수자인권 등이었다면 (이들의 인권들이 그만큼 잘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로 두더라도) 공익제보자 문제, 주민소송 문제, 저소득층의 의료권 문제 등은 평소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조차 간과하거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다. 물론 아직까지 사람들이 일반적인 인권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이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예 현재 어떤 현실에 마주치고 있는지도조차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법의 혜택에서 소외된 채 방치돼 있거나, 법의 이름으로 권리의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공감은 이렇게 언론이나 사회적 인식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배제된 사람들과도 무릎을 굽혀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나누려 노력 중이다.

눈물을 참으며, 이를 악물고...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여러 사안을 접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있을 수 없는 것을 하나 꼽자면 장안4동 '아트빌라 공영주차장 사건' 이다. 사건의 개요는 이랬다. 주차 수요도 많지 않고 근처에 넓은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부지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인해 평생을 들여 간신히



장만한 보금자리가 절거될 위기에 처한 주민 분들이
공감에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다.
막대한 보상금도 호화로운 아파트도 다 필요 없고,
다섯 식구가 비좁게 살더라도 그저 생활의 터전이 되는
'내 집'을 빼앗기지 않으면 그걸로 족하다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실례가 될까 싶어 이를 악물고
나오는 눈물을 참았다. 어떻게든 이분들을 돕고 싶어도,
공감 인턴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을 뿐
평범한 대학생에 불과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정말 답답했다.

그러다 미약하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디지털카메라 하나만 달랑 들고 무작정 현장조사를
나가게 되었다. 주민 분들은 정말 아무 것도 아닌
그저 학생일 뿐인 나를, 사건과 관련해 주변 환경을
보러 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왔다며
엄청난 환대를 해주셨던 기억이 난다.
그 바람에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참 황송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별거 아닌 작은 일 하나에도 고마워하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작은 도움일지라도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서민들에게는 절실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다. 나아가 이제 공감 인턴생활은 끝났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직접 마주보며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아닌가 한다.

공감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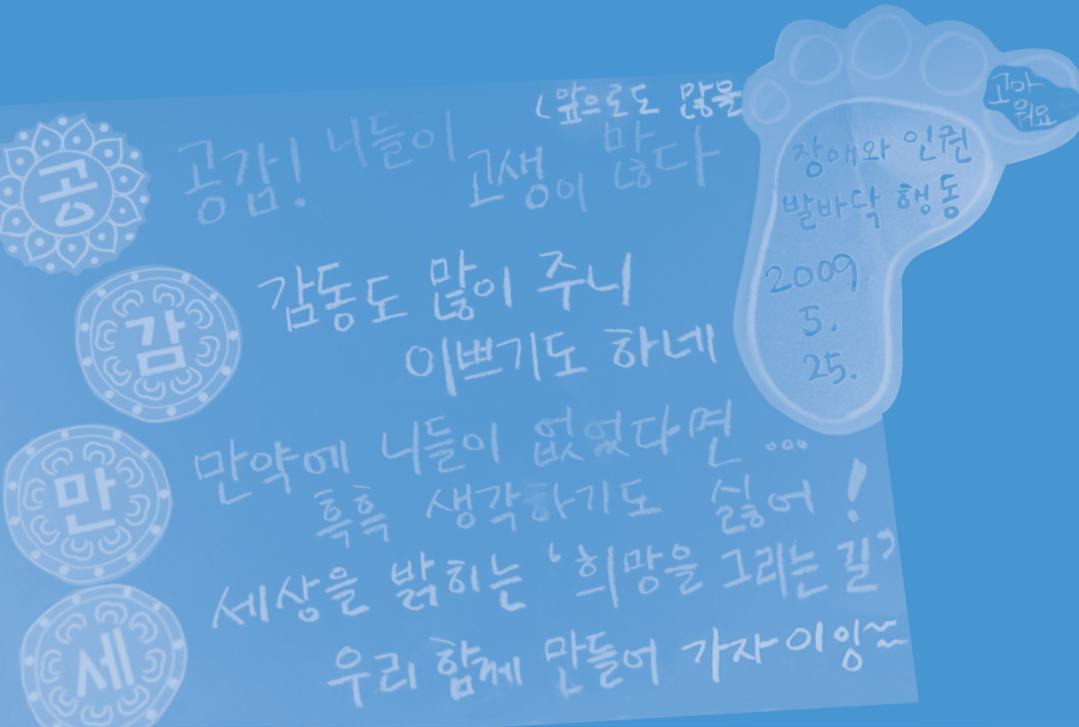
공감의 구성원들과 인턴들은 항상 많은 업무로
여유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일에서 순간순간
행복과 보람을 가슴으로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명예나 이익을 위한 것,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마음에서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감에서의 6개월 동안 자료 조사와 토론회,
또 포럼에 참석하면서 지식들만 쌓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사람과도 공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는
태도를 함께 배울 수 있어서 더욱 좋았던 것 같다.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희망을 그리는 길을 걷고 있는
공감! 좋은 사람들과 우리 사회의 인권의 경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서 정말로 행복했다.
그리고 분명 공감과의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 약간의 두근거림과 조금은 과도한 의욕으로
맞이했던 공감 인턴으로서의 첫 날을 기억하면서,
가톨릭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기도문 구절 하나를
남겨 본다.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공감이야기 * 공감 5주년 행사 후기

공감 다섯 살, 참 고맙습니다

글 | 소라미 변호사





5주년 기념 자료집을 준비하며
 구성원 모두에게 “내가 생각하는 공감은?”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쪽지를 기획했습니다.
 각자 나름의 정의들을 내렸죠.
 저에게 공감은 ‘일기장’입니다.
 “고민하고, 설레고, 화나고, 반성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나의 희로애락을 적어나가는,
 그리고 내가 변해가는……”.

저는 지난 5년 간 공감에서 새로운 주제와 사건을 맡을 때마다
 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열정적인 활동가를 보며 가슴 설레고,
 사건을 풀어나가며 부딪히게 되는
 타인의 적대감과 무관심, 예의 없음에 분노하고,
 낙담하는 스스로를 반성하며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2004년 1월, 아름다운재단으로 첫 출근했을 때를 떠올려봅니다. 재단 사무실 한 귀퉁이 베란다를 개조해 만든 2~3평 남짓한 공감의 사무실은 책상 4개와 컴퓨터 4개만으로도 가득 찼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구성원 서로의 의자가 맞닿을 정도였습니다. 참 열악한 환경이었지요. 게다가 구성원 머릿속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無’의 상태였습니다. 막막했지요.

첫 출근 후 두 달 동안 4명의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종일 릴레이 회의를 하며 ‘공감’이라는 집을 지어나갔습니다. 당시의 ‘열악함’과 ‘막막함’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그렇게 시작한 공감은 두 차례 이사를 한 뒤, 현재는 30여 평의 사무실에 보급자리를 마련했습니다. 7명의 변호사와 2명의 간사, 20여 명의 인턴이 함께 일하고 있고요. 물리적으로 정말 큰 변화이지요.

공감은 오랜 고민 끝에 첫 사업으로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사업’(이하 ‘파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법률적, 사회적 지원이 열악한 공익단체(시민·사회·인권 단체)에 공감 변호사가 주 1~2회씩 출근해 필요한 법률자문, 소송지원 및 제도개선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처음 대면한 ‘이주민’, ‘장애인’, ‘노숙인’, ‘성매매여성’와 같은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전혀 공부해보지도 접해보지도 않은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을 통해 공감은 소수자·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를 알게 됐고, 인권





“공감의 법적 실천은 ‘법의 지배’를 이루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법의 지배를 넘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일상을 돌보는 법을 추구합니다.
 법의 언어를 바꾸고, 법의 관습·편견과 통념을 깨뜨리며
 새로운 법의 길, 법의 정신을 지향합니다.
 ‘법의 지배’의 모든 과정에 ‘사람’과 ‘인권’이 기억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 아름다운재단 윤정숙 상임이사님의 글 중



현장을 구체적으로 보았으며, 함께 하는 단체와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첫 파견사업 당시 11개였던 공익단체와의 네트워킹은 현재 150여 개로 확대됐습니다. 공감이 지난 5년간 크고 작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익단체와의 소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권활동가들에게 공감의 변호사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토론회 때마다 언제나 마음 편히 초대할 수 있는 패널리었고, 국가의 폭력 앞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던 든든한 지킴이었으며, 언제라도 전화를 걸어 법률상담할 수 있었던 변호사이자 함께 소주 한 잔 하며 울고 웃었던 동지였기에, 인권활동가들에게 공감의 변호사는 가장 만만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변호사이자 친구였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 있었던 공감 5주년 기념후원행사 당시, 변연식 선생님(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내 주신 축전은 공감에게 최대의 찬사였습니다. 공익단체에 ‘만만한 변호사 되기’. 바로 지난 5년간 공감이 노력하며 그려 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감이 계속되는 한 변함없이 지켜나갈 자세이기도 합니다.

5주년 기념사업은 몇 차례 내부진통을 겪은 후, ‘그 간의 공감 활동을 정리하고 이후 전망을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보다 안정적인 재정구조 마련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마치자마자 구성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시는 후원행사의 ‘후’자도 꺼내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적은 수의 구성원들이 감당하기에는 꽤 버거웠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이번 5주년 행사는 공감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준비과정에서 평소 흠모하던 신영복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여러 분들로부터 글도 받았습시다. 구성원들끼리 환한 형광 불빛 아래에서 아카펠라 연습을 하며 평소 보지 못했던 모습에 박장대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언론의 보도로 보다 많은 분들과 공감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분들을 만나 뵙고 공감에 대해 날 선 조언을 들었으며, 공감의 버팀목인 기부자님들께 직접 감사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5주년 행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멀리서 응원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인사 드립니다. “공감 다섯 살, 참 고맙습니다.” 지난 5년간 공감에서 참 행복했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소수자 위한 기획소송 등 진행해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창립 5돌 후원회에
가지 않으실래요?

국내 유일의 비영리 공익변호사그룹이 있다. '공감'이다.
2004년 1월에 만들어졌다. 어느덧 5년을 넘겼다.
5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5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를 연다. 이 후원 행사에 참여해 '공감'에 기부해야
할 이유를 공감하게 만드는 데 이 기사의 초점이 있다.
노골적 홍보 기사를 써도 좋을 만한 가치를
그들이 품고 있다. _편집자

낮은 곳으로 임하는 법률가들 있으며...

글 | 안수찬 기자

사법연수원생 **염형국**은 원래 '아웃사이드'였다. 대학 시절, 그는 공부도 안 했고 학생운동도 안 했다. 법대의 개인주의 풍토가 싫었지만, 그렇다고 전공을 바꾸는 도발을 일으킬 용기도 없었다. 용기를 내어 저지른 일이 딱 하나 있었다. 만난 지 석 달 된 동갑내기 여학생과 결혼해버렸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지금 놓치면 끝장이다" 생각했다.

사법연수원에서 그는 '아웃사이드'였다. 좋은 성적을 내는 일에 다들 혈안이 돼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연수원 성적을 높여 판검사가 되겠다고 안달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 변호사가 될 것인지도 궁리하지 않았다. 용기를 내어 저지른 일이 딱 하나 있었다. 다짜고짜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를 찾아가 공익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날이 참 무더워 반팔 와이셔츠에 땀이 잔뜩 배어나던 2003년 8월의 일이다. 이후로도 그는 결심하면 저지르는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 완전 무수임료로 공익 법률활동만 하는 공익 변호사그룹은 '공감'이 유일하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차혜령, 염형국, 정정훈, 장서연, 황필규, 소라미, 김영수 변호사

무수임료 · 영리활동 일체 금지 원칙

또 다른 사법연수원생 **정정훈**은 '문장'을 사랑했다. 여러 분야의 책을 줄기차게 읽었다. 한 달에 15만 원씩을 책값으로 썼다. 2003년 12월, 연수원 졸업을 앞두고 있던 그는 기막힌 '문장' 하나를 발견했다. "낮은 곳에 임하는 용기로 소외된 희망을 되살리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로펌을 만들겠습니다." 염형국이 '동지'를 찾고 있었다. 연수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이 정정훈의 인생을 바꿨다. 그는 나중에 '공감'이라는 이름을 지어붙여 게시판의 명문에 화답했다. 훗날 그는 '책과 술'이라는 소모임을 만들어 예비 법조인 · 대학생들을 장차의 공익 변호사로 길러낼 터였다.

2004년 1월 5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서 '공감'의 첫 번째 회의가 열렸다. 염형국 · 정정훈 변호사 외에도 사법연수원 동기인 **소라미** · **김영수** 변호사가 함께했다. 아름다운재단이 모아둔 '공익 변호사 기금'을 종잣돈 삼아 일을 벌였다. 김영수 변호사는 출근 첫날의 사무실을 기억한다. 아름다운재단 사무실 2층 베란다에 유리 지붕을 덮었다. 4개의 책상에 4대의 컴퓨터를 올렸다. 묵묵하고 꼼꼼한 그의 책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무실에서 가장 깔끔하다. 그래도 앉으면 다른 사람의 등이 맞닿았다. 1989년 대학에 들어간 김 변호사는 "그 시절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졌던 사회적 정의감"으로 '공감'에 합류했다. 정의를 믿었던 그는 찬바람 들이치는 가건물의 사무실이 누추하다 여기지 않았다.

매일 5~6시간씩 두 달여 동안 회의를 거듭했다. '공감'의 열개가 이 시절 마련됐다. 월급은 연봉 3천만 원. 세금 떼기 전의 액수이므로, 실수령액은 월 200만 원이 조금 넘는다. 개인적 수익 활동 금지. '공감' 차원의 영리활동도 금지. 외부 강연비 등 부대수입은 사무실 운영비로 쓴다. 못 변호사들은 이들의 누추함에 입이 벌어질 것이다.

진짜 놀랄 만한 일은 이들이 받는 돈이 아니라 하는 일에 있다. '공감'의 모든 구성원은 평등하다. 변호사와 상근활동가 사이의 구분도 없다. 대표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 여느 로펌과 달리 비서직도 없다. 소송서류 준비부터 정리까지 각자 알아서 한다. 모든 구성원은 서로의 활동을 존중하고 도울 뿐이다. 일정 시기마다 시민단체를 바꿔가며 법률지원 사업을 벌인다. '공감' 변호사가 각 단체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공익소송을 벌인다. 수임료는 받지 않는다. 소송비용 등은 모두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각종 법률 제정과 캠페인 활동도 벌인다. 법정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기꺼이 '현장'에 간다. 1인 시위도 하고 현지 조사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여 지난 5년간 '공감'이 이룬 성취의 큰 줄기는 이렇다. 62개 공익단체에 대해 법률지원 사업을 펼쳤다. 권력자들은 법을 무기로 약자를 탄압하는데, 이에 맞서는 시민단체들도 법을 방패로 삼을 일이 많다. '공감'은 그들의 방패가 됐다. 일련의 '기획 소송'도 전개했다. 보통의 변호사들은 돈이 안 되면 사건을 맡지 않는다. 반대로 돈이 되면 조직폭력배, 파렴치범, 부패 정치인도 변호한다. 법의 이름으로 주목받아 마땅한 일을 변호사들은 무심히 발길로 찬다. 차버리고 회피하는 일을 '공감'이 맡았다.

변호사·활동가 구분 없는 평등 조직

장애 어린이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아냈다(2006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퇴직금을 받아냈다(2007년 6월). 상관에게 스토킹을 당하고도 항명죄로 1심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여군장교의 무죄를 입증했다(2008년 7월). 중국인 민주화 운동가의 난민 지위를 처음으로 인정받았다(2008년 11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출국당할 뻔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 권리를 인정받았다(2009년 1월).

그러나 승리한 소송만을 훑어보는 것은 '공감'을 온전히 평가하는 방법이 아니다. 소라미 변호사는 인방미님으로 통한다. 동료 변호사들에게 '기합'을 넣으면서 분위기를 다잡는다. 그랬던 그도 지난달엔 잠시 몽클해졌다. 세네갈 출신의 이주노동자가 아프리카풍의 목걸이를 선물했다. 한국 여성과 동거하면서 아이를 셋 낳아 살던 사람이었다. 불법 체류자로 단속돼 추방당할 위험에 처했다. 소 변호사는 그를 가두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그에게 재입국 비자를 내줘야 할 세네갈 주재 한국대사관, 그의 아이들을 맡아 입양 보내려는 한국의 고아원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류를 내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한국에서 아내와 아이를 다시 만났다. 목걸이는 그가 고국에서 가져온 감사의 징표였다.

소외된 자의 벗이 되는 이런 일이 '공감' 변호사들에게는 무수히 많다. 모든 소수자가 '공감'의 고객이다. 장애인, 여성, 노인, 어린이, 노숙인, 철거민, 성적 소수자, 이주노동자, 난민 등의 권리를 변호했다. 노인·아동 학대, 장애인·이주노동자 차별 등에 대한 법률 매뉴얼을 만들고 관련 법령 제·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대학생·예비 법조인·사법연수원생·외국 변호사 등을 상대로 인권법 캠프를 열거나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7개 로펌 · 400여 명 개인 후원으로 유지

이런 삶이 좋다고 제 발로 찾아온 사람들이 여럿 생겼다. 나이는 많지만 뒤늦게 사법고시에 합격한 **황필규** 변호사는 '공감' 모델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다. '공감' 창립 때, 그는 아직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다. 공익 법률활동을 하겠다고 일찌감치 마음먹고, 주변 사람들에게 개인 후원금을 모으고 있었다. 그런데 엄 변호사 등이 선수를 쳤다. 연수원을 졸업하자마자 그는 '공감'에 들어왔다. 밤샘을 밥 먹듯 하고 저돌적으로 사업을 펼치면서 노련한 협상을 이끄는 늦깎이 변호사의 수완은 창립 멤버들을 완전히 홀렸다.

2007년 2월에 합류한 **장서연**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 전남 순천지청에서 1년간 일했다. 도박 등 사행성 범죄를 전담했다. 특권 의식에 젖어들까 두려워졌다. 검사를 그만둔다는 이야기에 가족들이 모두 말렸다. 가족들은 지금 '공감'에 후원금을 낸다. **차혜령** 변호사는 2008년 3월에 '공감'을 찾아왔다. 3년 동안 대형 로펌에서 일했다. 건설사들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공감'으로 옮기면서 그의 임금은 4분의 1로 줄었다. 그래도 지금의 보람을 옛날의 연봉과 맞바꿀 생각은 전혀 없다.

4명의 변호사와 1명의 상근활동가로 시작했던 살림살이는 이제 7명의 변호사와 2명의 상근활동가로 늘었다. 가건물을 벗어나 38평짜리 사무실도 마련했다. 7곳 정도의 대형 로펌과 개인 기부자 400여 명이 '공감'을 후원하고 있다. 그래도 더 많은 낮은 곳으로 다가가 더 많은 소외된 자를 도우려는 이들의 욕심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취재 내내 열심히 캐묻고 다닌 게 있다. 서로 싸운 적이 있는지, 조직이 위기에 빠진 적이 있는지, 묻고 또 물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심각하게 생각하다 한결같이 답했다. "그런 적 없는 데... 지향이 같으니까... <한겨레21> 기자들은 서로 싸우나요?" 법 없이도 살아가는 법률가 공동체는 희귀하고도 신통하다. 그들이 배우고 익힌 법이라면 능히 약자의 공동체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법률가들을 돕는 방법은 홈페이지(www.kpil.org)에 소개돼 있다.

채민이는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았어요

글 | 황기혜 9기 인턴

기부자 이야기 1 *
» 임현택, 오지은, 임채민 기부자

공감은 반해버렸습니다. 무스로 힘을 준 베키엄 머리,
요즘 하늘과 닮은 하늘색 티셔츠, 졸림을 가득 담은 눈을 하고
공감 사무실로 첫 발을 내딛은 채민이에게!

#1__한 가족의 등장

9월 7일 오후, 채민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공감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들이 모인 사무실에 등장한 이 가족은 다른 방문자와는 달라
보입니다. 이 가족이 공감에 온 것은 채민이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맞는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채민이의 부모님은
아들의 첫 돌을 축하하는 특별한 선물로 '기부' 를 선택했습니다.



너무 약속하여 많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사회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이번에 들이 친 우리 채민이에게
인생의 본보기가 되어 주시길 감사합니다. < 임채민
아빠. 엄마 드림.

막 사무실로 들어온 채민이는 아빠 품에 안겨 낯선 공간과 낯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엄마아빠의 바람이 이미 이뤄지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채민이가 품을 세상에 공감이 들어가게 된 것은.

#2 ___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았어요

공감구성원들을 감동시킨 공감 홈페이지 아이디 ‘공감사랑’의 주인공 오지은 씨는 한겨레21 기사에서 공감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기사를 본 후 바로 인터넷으로 공감을 검색했죠. 열심히 공부해 법조인이 된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내 삶의 목표가 돈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자신을 발견해요. 이런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는 공감은 저에게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정기기부를 시작한 오지은 씨와 임현택 씨는 첫 아이의 돌을 맞으며 약속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돌잔치 대신 기부를 하자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돌잔치는 어른들끼리의 잔치 같다는 생각을 했고, 더 의미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부를 결심했고 그 기부를 공감에 하기로 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떤 것을 포기하고, 선택해야만 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채민이네 가족 역시 그랬습니다. 사랑스러운 손자의 생일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길 바라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도 중요한 것이었기에 집안 어른들을 먼저 설득해야 했습니다. 공감이 기부자님들에게 감사한 것은 하나하나의 기부에 금액으로 계산하지 못할 이런 마음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채민이의 첫 돌 기념 기부는 사라진 돌잔치에 자리했을 많은 이들의 마음이 더해진 것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의 특별한 기부에 공감이란 그냥 있을 수 없어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공감의 회의실이 이 순간만큼은 채민이를 위한 파티장이 됐습니다.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목소리 높여 생일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고깔모자를 쓰지 않으려 버둥대다 잔뜩 찌푸렸던 채민이가 스리슬쩍 웃어 보입니다. 그 웃음을 마주하며 구성원들은 채민이가 '충명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봅니다.

#3__채민이와 함께 자라는 공감이 될게요

아빠 품에 안겨 사무실 이곳저곳을 구경하는 채민이를 보며 오지은 씨에게 첫돌 기념 기부로 공감을 택한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소송, 재판 모두 돈이 있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공감은 이런 생각을 깨고 사회적으로 낮은 곳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잖아요. 이런 공감의 활동에 감사해요.”

평소 이주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오지은 씨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공감의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곳의 모습이 아이에게 무언의 교훈이 될 것 같아서요. 사실 익명기부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채민이에게 네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욕심에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오지은 씨는 아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돌잔치 사진 대신 공감 변호사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남기기 위해 공감사무실을 직접 방문한 ‘엄마’입니다. 이 방문이 공감구성원들의 시간을 뺏은 건 아닐까 죄송하다고 합니다. 천만에요. 공감은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나 채민이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어 즐거웠답니다.



훗날, 채민이가 자라 돌잔치 사진 대신 공감 구성원들과의 사진을 보고 ‘공감은 뭐하는 곳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고 대답하겠다는 부모님. 채민이네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공감에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의 롤모델이 되어주세요!”

맑은 시선을 건네는 한 가족의 방문에 공감구성원들은 다짐합니다. 소중한 마음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마음 모아 채민이가 자라는 만큼 공감을 키워나가겠다고.

“채민이가 글을 배우고 오늘의 일을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을 때쯤, 공감이 채민이의 자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부자님의 한마디!



공감이 공감일 수 있는 이유, 기부자님!

공감에게 기부자님들은 카타리아저씨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공감이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그림자 속 카타리아저씨를 상상하는 주디처럼, 공감은 글씨와 숫자로 기부자님들을 어렵fut이 짐작할 뿐입니다. 정말 밝고 싶은 분들인데, 그래서 공감은 준비했습니다.



김정일 (2009. 4)

“공감은 뭔가 달라요. 다른 단체와 다른 점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한 마디로 말해 애정이 넘친다고 할까요? 많은 액수를 기부하지는 못하지만, 1호 기부자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 사람이 하루 중 순수하게 자신의 의지로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기부 위해 계좌번호를 입력하던 그 순간, 자유의지를 느꼈어요. 저 스스로의 생각에서 비롯된 능동적인 결정이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이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적은 금액이지만 기부를 통해 저의 선한 자유의지를 실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박익형 (2009. 6)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마지막으로 찾는 수단이 법이라고 생각해요. 법에서마저 불이익을 받는다면 갈 곳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몇 년 동안 배운 지식이 그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처음 공감에 갔을 때 인상 깊었던 점이 사무실은 좁지만 일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인상이 좋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법이 결코 편한 게 아닌데, 법을 다루는 공감을 편하다고 여기는 제가 말예요. 그건 아마 공감이 '공감할 수 있는 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제게 기부는 사회참여라는 의미가 더 커요. 적은 금액이지만 이 정도라도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만두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사회에 나가게 되면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많은 한계를 느껴요. 저는 공감의 활동이 근본을 건드리는 것이라 생각해요. 저 역시 유명 연예인이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보면 마음이 동하고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법이라면 사회를 큰 틀에서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선혜숙 (2009. 7)

기부자임을 밝고, 이야기를 듣는 '기부자인터뷰'를..... 쉽지 않은 섭외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인터뷰를 승낙해주신 일곱 분. 아름다운 마음에, 공감에 대한 애정에, 격려의 목소리에, 삶의 지혜까지. 공감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이야기들로 조금 더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공감에 힘찬 응원가, 따뜻한 온기, 기본 좋은 미소로 여러 분들께 전해졌습니다. 공감이 공감일 수 있는 이유, 기부자님들! 기부자임을 만나기 위해 공감은 2010년에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



박지호 (2009. 10)

“기부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거죠. 만원, 이만 원은 다른 데서 아낄 수 있는 비용이잖아요. 저한테는 당장 없어도 괜찮은 돈이니까 대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기부는 '관계'의 문제이고, 제가 하고 있는 봉사활동은 제 '욕심'이예요. ... 공감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같은 꿈을 꿀 수 있다면, 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상관없어요. 누가 저를 들여다봤을 때 창피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일종의 욕심 같은 거죠.”



박은경 (2009. 11)

“소득의 1%를 기부하고 있는데, 이 1%는 제 몫이 아니라 사회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기부는 나눔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나눔은,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학용품을 나눠 쓰는 것 같이 생활 전반에 필요한 것들을 같이 쓰는 거예요. 얼마 전 아이가 아프리카 식수 문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물을 아껴 쓰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눔에 익숙해지는 게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이지요. ... 제가 생각하는 인권은 '생명'이예요. 그래서 꼭 지켜야 할 권리죠.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알았으면 해요. 더 많이 홍보해주세요.”



이찬호 (2009.12)

“처음 기부할 때 생각했던 공익변호사와 공감은 100% 닮아 있습니다. 법은 일반 사람들이 알기에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공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 얼마 전 유대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유대인의 진정한 힘을 그들의 기부에서 느꼈습니다. 그들의 기부는 자기 몫만 가지고 나머지는 도려내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자신이 필요한 만큼을 제외한 범위에서 기부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현실론적인 기부라고 적어주세요.”

2009년, 공감활동 리스트

1월

【여성인권】

- 양육권 침해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12월)
- 라이베리아여성 대리 한국인 친부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소송 (~12월)
- 몽골여성 이혼 및 친권자지정청구소송 (~11월)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제작 이주여성교육 동영상 강의 촬영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주최 방문교육 상담사 법률교육
- 자유업종 성매매알선업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 다문화가정의 법률문제 심포지움 참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빈곤과노동팀/성폭력방지팀/성매매방지팀 활동 (~12월)
- 군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7월)
- 이주여성인권포럼 (~12월)
- 두레방 의뢰 미군 자녀 출생한 필리핀 여성 사례에 대한 법률지원 (~7월)

【장애인권】

- 청계천 접근권 차별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 (~3월)
- 청주 지적장애 여성 친족성폭력 1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작성
- 장애인 모욕 사건 의견서 작성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석 및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작업 (~3월)

【이주와 난민】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중국동포 부당구금 사건 관련 보호 및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5월)
- 버마 친족 여성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4월)
- 버마 NLD 회원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7월)
- 부양료심판소송 (~12월)
- 산업연수생-중소기업중앙회 손해배상사건 원고(산업연수생) 승소 확정
- 전남대학교 교양교재 「인권의 이해」 중 '이주민과 인권' 부분 집필
- 난민인권 실태조사 모임 참여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주최, '경제위기하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참여
- 이주정책개선모임 참여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마련 및 발의
 - 법무부 개정안 의견 제시 (~12월)
- 난민정책개선모임 참여 :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및 발의 - 법무부 개정안 의견 제시 (~12월)
- 유엔난민기구 (UNHCR) 협력사업 회의 참여 (~12월)

【빈곤과 복지】

- 구세군 노숙인쉼터 설치·운영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사건 항소심 변론 (~7월)
- 흑석동 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청구 항소심 변론 (~9월)
- 용산참사 관련 활동
 - 유가족 면담 및 법률 자문, 구속된 철거민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적부심사청구 변호인 활동, 구속 피의자 신문 참여
 - 조선일보에 대한 정정보도 조정신청사건
 - 경찰특공대 폭력행위 등에 관한 기자회견
 - YTN 인터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의뢰 노인학대 사례 부양료심판청구 (~12월)
- 성가정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법률교육 '생활법률문제'
- 수도권 지역 노인복지관 상담원 대상 법률교육
-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주최 노인 관련 업무종사자 대상 노인 소비자 권보호방안 법률교육
- 해외입양인 단체와 공동으로 입양제도 개선모임 진행 (~12월)
- 대한변호사협회 노인법률지원위원회 회의 참여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참여



【주민자치】

- 성남시 지방방비 재정환수를 위한 주민소송 항소 (진행중)
-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 검토, 청구서 제출
- 미들주민회(노원구) 주민소송건 검토 및 자문

【국제인권】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한국형기업인권가이드라인 토론회 참여
- 국제인권네트워크 모임 참여 (~12월)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참여 (~12월)
- 해외한국기업 대응회의 참여 (~12월)
- 한국인권재단 기업인권연구모임 참여 (~12월)
- 타일러 지아니니 허버드 인권클리닉 소장 면담 - 협력방안 논의
- 토요타재단 한국-필리핀-일본 이주과정 프로젝트 진행 (~12월)

【공익법 일반】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소송 (~7월)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촛불집회 참여자 형사사건 변론 (~5월)
- HIV 감염 외국인 출국명령취소소송 상고심 진행(대법원 승소)
-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사건 항소심 변론 (진행중)
-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집단사망대책위원회 면담
 - 한국타이어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송 제기
- 사법피해자 검찰불기소처분 이유로 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상고심 변론 (~4월)
- 이길준 의경 항소심 변론
- 내부고발 후 직장 왕따로 인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진행중)
-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6월)
- KBS 이사회 업무방해사건 (~5월)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익제보자 재정신청서 제출
- 유신 긴급조치 위헌법률제청신청서 작성
- 인권더하기법을 주최 대학생인권법캠프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강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시민, 활동가를 위한 형사절차가이드북,
 - 경찰, 검찰심문 부분 원고작성 (~5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시험법안,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 반차별공동행동 전체회의 참여 (~12월)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인권보고서간행소위 참여
- 세계한인변호사회 이사회 참여 (~12월)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입법감시 TFT, 'MB악법' 관련 의견서 작성 및 발송
- 범국민학살진상규명위원회 법률지원위원회
 -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대체입법 제정 추진

【공익법 교육·중개】

-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사법연수생 변호사실무수습 교육과정 '공익변호사' 강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소송 책자 준비모임 (진행중)
- 공감 월례포럼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남기', 강사
 - 로널(재한 줌마족 네트워크)



【여성인권】

- 한부모 가정의 과거 양육비 청구 및 친권자 변경 가사 소송 진행 (~7월)
- 이주여성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 청구 등 가사사건 지원 활동
- 경찰수사연수원 성폭력수사 전문과정 강의 - 성폭력 관련 법제
- 가정폭력 피해 캄보디아 여성의 남편상해치사 사건에 대한 공동 구명 활동 (~6월)
- 미혼모지원네트워크 면담

【장애인권】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점검 가이드라인' 작성 참여
- 탈시설정책위원회 참여 (~12월)
- 의안 착용자 비하 SBS '있다, 없다' 장애인 차별 진정 기자회견 참여

【이주와 난민】

- 기니 비사우 출신 이주노동자(한국인 여성과 사실혼관계에서 자녀 출신의 입국금지 유예 및 재입국지원 (~2월))
- 이주노동자방송국 주최 신입기자교육 '이주민의 인권' 강의
- 성공회대학교 노동사회연구소, 이주노동자 법제 관련 간담회 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인권교재개발 기획, 용역사업 심사 & 자문회의 (~11월)
- 강제퇴거명령 발부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활동가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위한 조사 동행 및 법률자문 (~6월)
- 이춘석 의원실 주최 다문화사회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방안 모색 간담회 발제
- 아시아인권센터 주최 아시아인권포럼 '이주민의 인권' 발표 및 토론
-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2주기 기자회견 및 부상자들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관련 면담
- 난민변호사네트워크 참여
- 법무부 국적난민과 간담회 참여

【빈곤과 복지】

- 구세군 노숙인쉼터 설치·운영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사건 항소심 변론 (~7월)
- 용산참사 관련 활동
 - 형사기소된 철거민 변호(용산참사 철거민 공동변호인단 참여) (~9월)
 - 용산참사 진상조사단 보고회 기자회견
 - OBS 우리시대, "철거민 유죄, 경찰 무죄" 검찰 수사결과와 발표 논란 시사토론
- 해외입양인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참여
- 미혼모지원네트워크 면담
- 이주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서울 YMCA·YWCA, 지구촌사랑나눔, 흥사단, 한국외국인지원단체협의회, 선린회 등 : ~12월)

【주민자치】

- 안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백원우 의원실, 재보궐선거비용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 지역워크숍 발제

【국제인권】

- UN 기업과 인권 특별대표 아시아지역 자문회의의 참여 (인도 뉴델리)

【공익법 일반】

-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 취소소송 (~5월)
- KT공익제보자 재결취소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중)
- 긴급조치 재심 사건 진행
-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사건 항소심 (위헌법률심판제청)
- 일가재단 조찬모임 공감 소개 특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권법 TV 강좌 '인권판례연구' 진행 (~5월)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원양성 법률교육 진행
- 국가정보원 내부고발자 사건 자문
- 탈북자 신원공개 및 재산손실에 대한 보상건 법률검토와 자문
- 한국언론재단 주최, '언론의 범죄피의자 얼굴 공개와 인권에 관한 라운드 테이블' 토론 참여
- 의약품공동행동, 특허법 개정 토론회 참여
- 반차별공동행동 3. 8 여성의 날 기획단 행사 참여
-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협의회 참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Global Legal Clinic 개소식 참여 및 외부 자문위원으로 위촉



【공익법 교육·중개】

-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 특강 기획 & 제안서 발송

3월

【여성인권】

- 태국여성의 한국인 친부를 상대로 한 친권자 지정 및 유아인도청구 (진행중)
- 재혼인신고 불수리 피해 베트남·한국 국제결혼 부부 법률상담
- 대전여성인권센터 의뢰, '온라인 상 성구매자의 구매후기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한 법률의견서 작성
- 한국여성재단 의뢰, '기본재산 용도변경'에 관한 법률자문
- 2009년 성평등 디딤돌상 수상 ('군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



【장애인권】

- 수사절차상 인권침해 입은 지적장애여성의 국가배상청구 소송 (진행중)
- 강제추행 피해 중국동포 장애여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9월)
- 한림대 박사과정 입학과정 장애인 차별 상담
- 경찰 폭행 지적 장애인 피의자 경찰서 접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최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사업 상담사 교육' 중 장애인차별금지법, 여성폭력 관련법 교육
- 조치원 YWCA 주최 장애여성 성폭력 관련법률 교육
- 장애인차별금지법 가이드라인 작성
- 서울시의 성립재단 기부채납 사건
 -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작성
 - 항소심 판결 비판 기자회견

【이주와 난민】

- 김해·수원·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불법 출입국단속 관련 국가배상소송 (~12월)
 - 마석, 김해 등 불법 출입국 단속 규탄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길거리 불법 출입국단속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중)
- 벌금형 받은 중국 유학생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처분 취소소송 (~6월)
- 버마 버마행동 회원 8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8월)
- 네팔 출신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 보호를 위한 특별체류자격 신청 지원(~3월)
- 창원 이주노동자센터 법률교육(이주여성, 노동법)
- 김춘진 의원실 주최 '위장결혼으로 인한 한국국적상실자 구제를 위한 입법 공청회', 개요 및 논평 발제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주인권소위원회 참여 (~12월)
 - 파룬궁 진정사건 관계자 면담
 - NGO 간담회 참여
 - 이주외국인법률지원변호사단 구성 & 운영
- NDTV 인터뷰 - 한국의 난민상황 관련

【빈곤과 복지】

- 재개발/뉴타운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청구 집단소송 (진행중)
- 용산참사 관련 활동 - 형사기소된 철거민 변호 (용산참사 철거민 공동변호인단 참여) (~9월)
- 광정숙 의원실 주최 '보조금 횡령 근절방안' 긴급토론회 참여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참여
- 입양정책개선모임 참여
 - 입양 관련 법령 개정 관련
 - 세계한인변호사회 이사진과의 간담회 | 입양정책 개선 & 법률상담 등 협력사업 협의
 - 세계한인변호사회 법률상담 실시
- 이주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시민행동 회의



【주민자치】

- 청양군 주민소송(청양군업무추진비, 예산낭비 상고) (~6월)

【국제인권】

- 해외한국기업감사회의 참여

4월



【공익법 일반】

- 한국타이어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5월)
- 전국여성노동조합 해고무효확인소송 (진행중)
- 공익제보자 재심판정취소소송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실무수습 사법연수생 대상 강연 '공익변호사의 활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권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서 작성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정식재판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작성
- 법과 사회 이론학회 주최 심포지움 '변호사시험법' 토론회 참여
- 우윤근 의원실 주최 '촛불재판 개입, 법원의 위기인가?' 토론회 참여
- 지식재산연구원 주최, '강제실시제도 전문가 포럼' 발표
- 한국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주최, 표현의 자유 토론회 '집시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



【공익법 교육·중개】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강의

【여성인권】

- 경찰수사연구원 성폭력수사 전문과정 강의 - 성폭력 관련 법제
- 탈북 여성의 남한 내 정착과정에서의 인권실태조사 (~12월)
- 젠더법학회, 가족형태 다양화와 그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조사 참여 (~6월)
- 전남대학교 여성연구소 주최 학술대회 '소외와 여성 그 현황과 미래적 비전 III-성소수자와 소외', '성소수자의 법적쟁점과 과제' 발표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 다문화가정의 법률문제 심포지움 참여
- 형법 및 형사특별법 개정 관련 대응모임 (~9월)
- 서울시 여성폭력방지 TF팀 자문회의 참여 (~5월)

【장애인권】

- 중로구청 손해배상청구 피소 사건 진행
- 탈시설정책위원회 주최 탈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여
- 광정숙 의원실 주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토론회 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토론회 참여
- 성년후견제 입법을 위한 성년후견추진연대-법무부 공동회의 참여
- 탈시설워크숍 참여
- 장애여성 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 활동 참여

여성장애인 폭력추방 주간 선포 및 폭력예방·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

일 시 : 2009년 4월 9일(목) 오전 11시 - 오후 2시
장 소 : 서울역 광장



【이주와 난민】

- 대전출입국 단속과정에서 폭행당한 이주여성사건 피해자 지원 (~8월)
- 버마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헌법소원 청구(3인) (진행중)
- 태평양전쟁당시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행정소송 (~12월)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 이주민 활동가 교육 (출입국관리법, 고용허가제법 개정안)
- 고려대학교 Global Legal Clinic 포럼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과 출입국관리법상의 통보의무' 발표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센터 난민세미나 '난민지위협약상 공포의 의미' 발표

【빈곤과 복지】

- 구세군 노숙인쉼터 설치·운영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사건 항소심 변론(~7월)
- 흑석동 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청구 항소심 변론 (~9월)
- 재개발/뉴타운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청구 집단소송 (진행중)
- 장안4동 공용주차장 도시계획취소 건(공익소송신청) 국민감사청구 (~5월)
- 울산참사 관련 활동
 - 형사기소된 철거민 변호(울산참사 철거민 공동변호인단 참여) (~9월)
- 이주 이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 토론회 발제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참여

【주민자치】

- 광주시장 공직선거법위반 고발 법률자문

【국제인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월례세미나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한 노트' 발표
- 경희대학교 - 참여연대 주최 세계시민포럼 태국내 미얀마난민 토론회 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UN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이행모니터링 가이드라인 개발팀 회의 참여
- 한국-필리핀-일본 이주과정 프로젝트 1차 재정보고서 작성
- UN 인종차별철폐회의(Durban Review Conference) 참여 (스위스 제네바)
- UN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필리핀 보고서 심의 참관 (스위스 제네바)
- UN 사회권위원회의 정부보고서 심사에 관한 NGO 대응모임 참여 (~12월)



【공익법 일반】

- 푸제온 강제실시 관련 산업분쟁조정위원회 심리
-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사건 법관 기피신청 (~5월)
- 희망변론 신청인 사법피해자 J씨 항소이유 법률검토 및 자문
- 국가인권위원회 '행정과 인권' 교재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집필
- 인하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성격' 토론회 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의약품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토론회 발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주최 '사법개혁 대토론회' 발표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의 대화 참여 (~12월)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위한 공익단체 간담회 참여

【공익법 교육·중개】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공거버넌스와 법 센터 주최 '희망을 그리는 법률가의 길' 강의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변호사의 역할' 강의
- 한양대학교 인권법 특강
- 천안 지역사회연대포럼 특강 '사회복지와 인권'
- 공감 월례포럼 '다큐멘터리 영화 - 어느날 그길에서' 강사 | 황윤(영화 감독)



【여성인권】

- 양육권 침해 베트남 여성의 권리회복을 위한 가사소송 (~6월)
- 나이지리아 여아의 한국인 친부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소송

【장애인권】

- 청각장애를 이유로 재임용 거부 사례 면담
- 박사과정 장애인입학불허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건 검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년후견제도 입법화 방안 자문회의 참여
- 정신사회재활협회 정신보건담당자 인권교육안 '정신장애 관련 국내외 기준' 원고 작성



【이주와 난민】

- 버마 NLD 회원 난민신청 법률자문 (~12월)
- 이라크 M씨 난민신청 법률자문 (~6월)
- 이디오피아 Z씨 난민신청 법률자문 (~8월)
- 우즈베키스탄 A씨, S씨 난민신청 법률자문 (진행중)
- 방송대학TV 난민 관련 인터뷰
- 경인방송 라디오 상담실 법률플러스 이주민 관련 법률상담

【빈곤과 복지】

- 구세군 노숙인쉼터 설치·운영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사건 항소심 변론 (~7월)
- 흑석동 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청구 항소심 변론 (~9월)
- 재개발/뉴타운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청구 집단소송 (진행중)
- 용산참사 관련 활동
 - 형사기소된 철거민 변호(용산참사 철거민 공동변호인단 참여) (~9월)
 -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 (진행중)
 - 법원의 수사기록열람·등사명령을 불이행한 검사 상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고소 (진행중)
- 주거권운동네트워킹 참여
- 이주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시민행동 법안전문위원회 회의
- 펄벅재단 춘의아동복지센터 시설폐쇄 명령관련 자문의견서 작성

【주민자치】

- 도봉구/양천구/금천구/성동구 의회의원 의정비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민소송 승소
- 밀양 감물리 생수공장 설치 관련 주민피해 구제 법률자문
- 구로구·동대문구 의원 의정비 관련 주민소송 자문 (~6월)
- 광주 '시민이 여는 밝은 세상' 정보공개청구소송 관련 자문의견

【국제인권】

- 버마변호사협회 대표 면담 - 협력방안 논의
- UN 사회권위원회의 3차 정부심사에 대한 반박보고서 준비 - 총론 & 주거권 영역 (~8월)

【공익법 일반】

-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위헌소원(장애인 참정권 관련), 청구기각 (법무법인 충청 진행)
- 선거관리위원회 공익제보자 파면취소 소청심사사건
- 외국어고등학교 지역별 선발제한 시행령 위헌소원 신청 검토
- 격월간 「사람」 편집위원회 참여

【공익법 교육·중개】

- 서울대 로스쿨 공익단체 실무수습 워크숍
- 공감 월례포럼 '칼 폴라니를 통해 보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위기, 강사 | 홍기빈(한겨레21 칼럼니스트)



6월

【여성인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장애인성폭력 상담원 교육'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주최 다문화가족생활코디네이터 양성교육 - 사례 중심의 법과 인권
- 경찰수사연수원 성폭력수사 전문과정 강의 - 성폭력 관련 법제
- 가족형태 다양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프로젝트 '다문화가정' 파트 원고 작성
- 함평 새마을 의뢰 결혼이주여성 가사소송 추완항소장 작성



【장애인권】

-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의 가해자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주최 '장애인 차별 상담 교육' (법적 기본대응)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검토
-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강사양성교육 '정신질환자 관련 국내외 기준'
- 광정숙 의원실 주최 장애인 보형차별 토론회 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시설 분야 전문위원회 회의 참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년후견제도 사회복지 자원방안 전문회의 참여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간담회 '정신장애인 차별 법제 개선' 참여
- 장애인자립지원단 부당연행 해화서 집견
- 장애인차별상담전화 법률상담지원 협약식 참여
- 장애여성 공감 성폭력상담소 의뢰,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의 검찰항고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서 작성
- 굿잡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위탁협약서 검토 및 자문

【이주와 난민】

-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주최 다문화교육사 양성과정 교육 (~7월)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노동부의 산업연수생 퇴직금 지침 관련 의견서 작성
-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7월)
- 비교공법학회 주최 학술대회 '자율규제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공법적 검토', '외국인주민 법제의 정비와 비교법적 검토' 발표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이주아동 간담회 발제
- 강명순 의원실 주최 이주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국회 간담회 토론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주인권소위 회의 및 NGO간담회 참여
- 국회방송 '입법제안 의원에서 듣는다'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소개 인터뷰

【빈곤과 복지】

- 비닐하우스촌 주민 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대법원 승소)
- 구세군 노숙인쉼터 설치·운영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사건 항소심 변론 (~7월)
- 흑석동 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청구 항소심 변론 (~9월)
- 재개발/뉴타운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청구 집단소송 (진행중)
- 용산참사 관련 활동
 - 형사기소된 철거민 변호(용산참사 철거민 공동변호인단 참여) (~9월)
 -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 (진행중)
 - 법원의 수사기록열람·등사명령을 불이행한 검사 상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고소 (진행중)
- 이주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시민행동 회의
- 세계한인변호사회 공익위원회 입양 회의 참여
- 국민권익위원회 세계한인변호사회 해외입양 관련 협력사업 회의 참여 (~8월)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참여
- 성북주거복지센터 의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구역 세입자 임대주택 관련 자문

【주민자치】

- 14개 광역자치체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고발건 검토 및 자문
- 강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원개발공사 예산방비 관련 주민감사청구 및 정보공개건 자문
- 동북여성민우회 공익소송 신청건 자문
- 풀뿌리자치연구소 광명시 주민투표건 자문

【국제인권】

- 국제연대모임 주최 6월 포럼 '활동가를 위한 팁 : 해외연수 프로그램 활용방안' 발표
- 일본난민협회 주최 난민 국제 심포지움 '동아시아와 한국의 난민상황' 기조연설(일본 동경)
- 한국-필리핀-일본 이주과정 프로젝트 중간 발표(일본 동경)
- 일본난민협회 주최 재정착 워크숍 참여(일본 동경)
- 일본 버마시민포럼 참여(일본 동경)
- 아시아·태평양 지역 난민권리 네트워크(APRRN) 회의 참여(스위스 제네바)
- 남반구 난민법률구조 네트워크(SRLAN) 회의 참여(스위스 제네바)
- 국제구금연합(IDC) 회의 참여(스위스 제네바)
- UN 난민기구 연례 NGO 자문회의 (UNHCR Annual NGO Consultations) 참여(스위스 제네바)
- UN 특별절차 연례 NGO 자문회의 참여(스위스 제네바)

【공익법 일반】

- 외국인 강사 회화지도(E-2)사증 정책 중 HIV 검사 의무화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진행중)
- 군의문사 유족비해당결정취소소송 변론
- 서이초등학교 법률교육 강의
-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정희의원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성소수자의 법적 쟁점과 과제' 원고 작성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주최 검찰개혁 좌담회 참여
- 이춘석 의원실·인권실천시민연대 주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참여
- 정보공유연대 주최, 이달의 토크 '이윤보다 생명' 참여
- 선거관리위원회 공익제보자 파면취소행정소송 준비모임 참여
- 푸제온 강제실시청구에 대한 특허청 기각결정 관련 기자회견



【공익법 교육·중개】

- 여성가족재단 '소통과 나눔으로 성장하는 대학생 여행(女幸) 서포터즈 리더십 캠프' 강의
- 한동대학교 주최 공익법의 날 '공익법운동과 공감' 발표
- 서강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특강 -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 공감 월례포럼 '여성연예인 인권 문제', 강사 | 유지나(영화평론가)

【여성인권】

-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가정폭력상담원 교육과정 다문화법제 법률교육
- 법관연수 '여성과 법 그리고 법원' 과정 이주여성의 인권실태 및 법적 현안 교육
- 서울지방변호사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단 워크숍 강의
- 다문화가족지원네트워크 아동양육방문지도사 대상 법률교육
- 한국법제연구원 이주여성 아동 관련 법제 및 개선 방향 강의
- 경찰수사연수원 성폭력수사 전문과정 강의 - 성폭력 관련 법제
- 이주여성인권포럼 여름강좌 '이주민과 한국법제' 발표
-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참여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5주년 토론회 준비회의
-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 회의 - 결혼중개업관리법에 대한 대응논의 (~9월)

【장애인권】

- 강제추행피해 장애여성 손해배상청구소송 준비서면 제출 및 변론
-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강사 아카데미' 강의
- 전국성폭력상담소 피해보호시설 협의회 장애인권역 상담소 워크숍 발표
-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운영위원회 참여 (~8월)
-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가이드라인 검토 및 자문 (~8월)
-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주최 한·일 국제심포지움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참여

【이주와 난민】

- HIV 감염인 출입국시 신체검사서 제출요구행위 위헌확인 (진행중)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전 지도부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 위헌확인 (진행중)
- 중국 파룬궁 회원 P씨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12월)
- 중국 파룬궁 회원 J씨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진행중)
-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건 상고심 (~12월)
- 조선족(무국적자)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 (~12월)
- 천안다문화공생 지원센터 출입국관리법위반 정식재판 청구 사건 변론
- 전남대학교 공익법센터 주최 연수교육 - '이주민과 인권'
-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젊은 여성 지도자 세미나', '공감 & 이주민 인권' 강의
- 기자소모임 '말도 안되는 모임', '이주민의 인권' 강의
- 서울지방변호사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단 워크숍 강의
- 다문화가족지원네트워크 아동양육방문지도사 대상 이주여성 관련 법률교육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활동가 수련회 강의
- 전현희 의원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주최 이주민 건강권 관련 입법공청회 토론
- 한국법제연구원 이주여성·아동 관련 법제 발제
- 이주민 관련 사회권 규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작성 (~8월)

【빈곤과 복지】

- 구세군 노숙인쉼터 설치·운영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사건 항소심 변론 (~7월)
- 흑석동 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청구 항소심 변론 (~9월)
- 재개발/뉴타운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청구 집단소송 (진행중)
- 용산참사 관련 활동
 - 형사기소된 철거민 변호(용산참사 철거민 공동변호인단 참여) (~9월)
 -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 (진행중)
 - 법원의 수사기록열람·등사명령을 불이행한 검사 상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고소 (진행중)
-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행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 참여 (~8월)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참여
- 해외입양제도 개선모임
 - 보건복지가족부 담당 정책관 면담
 - 국정감사활용방안에 대한 논의

【주민자치】

- 도봉구/양천구/금천구/성동구 주민소송(항소심) (진행중)
- 광주광역시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사용 공직선거법위반 고발 법률자문
- 울산시민연대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관련 자문
- 광주 '시민이 여는 밝은 세상' 지자체 보도자료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건 검토/자문

【국제인권】

-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NGO 의견서 (필리핀 한국기업 현지 인권침해 관련) 검토의견작성
- UN 난민기구 10개항 계획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참여(튀니지 튀니스)
- Parents Circle-Families Forum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단체) 면담



【공익법 일반】

-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 취소사건 항소 (진행중)
- 촛불 유모차 부대 경찰조사 변호인 참여
-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 강의 '기부금품모집법의 연혁 및 내용'
- 구금시설 트랜스젠더 처우 관련 워크숍 토론
- 조승수 의원실 주최, '통신비밀 보호법, 불법권력도 보호 대상인가' 토론회 참여
- 반차별공동행동 차별금지법팀 회의 참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현안대응팀 회의 참여
- 가족구성원연구모임 회의 참여
- 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의뢰, 공모 슬로건 사용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자문·이주노동자방송국 대표 명예훼손 사건 형사소송 (진행중)



【공익법 교육·중개】

- 대한 YWCA 평화이슈페스티벌에서 '대학생 평화나눔 운동' 주제 강의
-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모임 '국제인권변론' 강의
- 공감 월례포럼 '공정여행', 강사 | 임영신(이매진피스)

【여성인권】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주최 다문화강사 양성 과정 '이주여성과 법' 강의
-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최 결혼중개업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탈북여성인권실태조사 '연길-중조 국경지역 현지 실태조사' 참여
-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참여

【장애인권】

- 강제추행피해 장애여성 손해배상청구소송 준비서면 제출 및 변론진행
-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장애인상담소 권역 2009년 여름 워크숍 강의

【이주와 난민】

- 천안 다문화공생지원센터 출입국관리법위반 정식재판 청구 사건
- 버마 NLD 회원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진행중)
-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이주외국인법률지원변호사단 교육과정, '이주외국인 법제, 관행과 인권' 강의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고용허가제 5주년 기념 토론회 발제
- 성·인종차별공동대책위 주최, '한국사회 성·인종차별문제 토론회 - 나 이제 할 말 있다' 토론
- 난민의 개념 단행본 중 '유엔난민기구 난민판례모음' 번역 감수
- 피난처 주최 재한난민교통토론회 참여

【빈곤과 복지】

- 재개발/뉴타운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청구 집단소송 (진행중)
- 용산참사 관련 활동
 - 형사기록 열람 철거민 변호(용산참사 철거민 공동변호인단 참여) (~9월)
 -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 (진행중)
 - 법원의 수사기록열람·등사명령을 불이행한 검사 상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고소 (진행중)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참여
- 세계한인변호사회 입양팀 회의 참여

【주민자치】

- 연천군 지방자치단체 사업보조금예산낭비 사례(투자사업 실패)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 시민과 함께하는 밝은세상, 전남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검토/법률자문

【국제인권】

- 한국인권재단 기업인권연구모임 'OECD가이드라인과 NCP' 발표
- 에버트재단 주관 방한 베트남노동조합간부 간담회 참여
- 아시아·태평양 지역 난민권리 네트워크(APRRN) 운영위원회 참여 (전화회의)

【공익법 일반】

- 교도소 내 트랜스젠더 부당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중)
- 반차별공동행동 차별금지법팀 회의 참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현안대응팀 회의 참여
- 가족구성원연구모임 회의 참여

【공익법 교육·중개】

- NGO조직과 재정 강의



【여성인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중구지부 주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강좌 '행복한 여성' 2기 교육 (이주여성/성폭력 관련 법률)
- 사법연수원 '여성과 법' 특강
- 결혼이주여성 인권 실태 및 관련 법제도 현황
- 미군부대 고용된 한국여성의 부당하고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서 작성
- 보건복지가족부 의뢰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김소남 의원실 발의)에 대한 법률자문
- 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 주최 성매매방지법 시행 5주년 기념 워크숍 '성매매방지법 시행 5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발제
- 이주여성인권포럼,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애주 의원실) 검토
- 제주이주민센터 의뢰, 영주비자신청 거부결정에 대한 법률 자문

【장애인권】

- 장애여성 강제추행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 지적 장애인 친족성폭력 사건 자문
- 탈시설정책위원회 기획소송단 장애인차별금지법 검토
- 장애인차별시정 법률지원단 3차 회의 참여
- 울산장애여성성폭력상담센터 기간제교사 강제추행 사건 관련 자문



【이주와 난민】

- 버마 버마행동 회원 8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진행중)
- 서울지방변호사회 난민세미나 '난민판례분석' 강의
- 경기도인재개발원 다문화사회의 이해(외국인주민의 법적 지위) 강의
- 법무부(출입국), 검찰 시행규칙 등 내규지침 개선사항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연구원 면담
- 조선대학교 법학논총 '외국인 법제의 정비와 비교법적 검토' 기고
-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전현희 의원실 주최 이주민 건강권 관련 개정법률안 전문가 간담회 참여
- 전병헌 의원실 주최 다문화사회와 인종차별 토론회 '인종차별금지법의 의의와 내용' 발제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이주권리협약 쟁점 토론회 참여
- 성·인종차별공동대책위 주최, 차별금지 관련 내부 워크숍 발제
- 재클린 바버(Jacqueline Bhabha) 하버드대 교수 초청 이주와 난민 간담회 개최
- 피난처 주최 난민장기구금 관련 기자회견 참여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고용허가제 송출기관 비리 대응 논의

【빈곤과 복지】

- 흑석동 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청구 항소심 변론
- 재개발/뉴타운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청구 집단소송 (진행중)
- 용산참사 관련 활동
- 형사기소된 철거민 변호(용산참사 철거민 공동변호인단 참여)
- 수사기록 열람·등사기부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 (진행중)
- 법원의 수사기록열람·등사명령을 불이행한 검사 상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고소 (진행중)
- 보건복지가족부 입양제도 선진화를 위한 TF 회의 참여 자문 (~12월)
- 해외입양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 참여
- 세계한인변호사회 공익위원회 참여 (~12월)
- 가정법률상담소 해외입양인 법률상담
- 인도네시아대사관 법률상담 협의
- 해외입양인연대 법률상담 협의
- 국민권익위원회 입양정책 전문가간담회 참여
- 이주 이동·청소년 권리보장 시민행동 회의 참여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참여

【주민자치】

- 「주민소송 사용설명서(사례로 살펴보는 주민소송 가이드북)」 책자 발간(2009. 9)
- 광주비엔날레재단 정보공개청구권 검토·자문
- 충남 참여자치시민연대 정보공개청구권 행정심판청구(청구인용)

【국제인권】

- 대한변호사협회 UN인권이사회 북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 대표단 자문
- 아시아·태평양 지역 난민권리 네트워크(APRRN) 인사소위원회 참여 (전화회의)

【공익법 일반】

-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사건 항소심 변론 (진행중)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신종인플루엔자, 인권적 대처방안을 모색하다' 토론회 토론
- 다양한 형태의 가족차별 해소 및 가족구성권 보장 연구 모임 주최 비정상가족, 비범한 미래기획 유언장쓰기 캠페인 참여
- 용산참사 국민법정 준비모임 (~10월)
-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기념식 참여 및 청년변호사상 수상
- 구원장학재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건 검토/자문
- 재단법인 언어교육, 재단운영에 관한 자문
- 의약품공동행동, 신종플루 대책 기자회견 참여



【공익법 교육·중개】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특강,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법'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특강, '공감이 바라보는 인권과 법'

【여성인권】

- 주식회사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조치 사건 재정신청
- 베트남 여성 대리 부당한 혼인해제를 이유로 한 혼인무효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중)
- 가족관계등록법 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작성 제출
- 서울대 'NGO와 법의 지배' 강의
-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법제도 현황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강의
- 가정폭력피해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영주비자 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법률자문
- 보건복지가족부 의뢰 국제결혼 표준약관 자문의건 작성
- 이주여성인권포럼 진행, '캄보디아의 국제결혼중개 실태에 관하여'

【장애인권】

-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웃의 집단괴롭힘 사건 고소대리 및 조사동행 (10월~)
- 강제추행 피해 장애여성 손해배상금청구소송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 연구용역사업: 사법분야 모니터링 지표 개발 연구 참여 (~12월)

【이주와 난민】

- 출입국관리법 위반(허위초청) 사건 변론
- OBS(경인방송) 이중국적 관련 토론회 참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인권법 강좌 '이주민의 권리' 강의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인권학교 '이주민과 인권' 강의
-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재단 동천 난민법 워크숍 '난민판례' 강의
- 성인중차별 대책위 워크숍 강의

【빈곤과 복지】

- 재개발/뉴타운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청구 집단소송 (진행중)
- 용산참사 관련 활동
-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 (진행중)
- 범원의 수사기록열람·등사명령을 불이행한 검사 상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고소 (진행중)
- 구룡마을 비닐하우스촌 전입신고거부처분 취소건 검토 및 자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을 위한 '2009 기초생활 수급가구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참여
- 이주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시민행동 회의
- 해외입양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행동 회의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참여

【주민자치】

- 시도지사 업무추진비집행 공직선거법 위반 건 고발

【국제인권】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 아시아인권센터 국제인권 강좌 '국제인권변론' 강의
- UN 사회권위원회 질의사항 정부답변서 총론 & 주거권 부분 검토의견 작성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UN특별보고관 초청 국제회의 기획 및 진행
 -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 동아시아 국제심포지움 참여
 - 한국의 표현의 자유 국제워크숍 참여
 - UN특별보고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간담회 참여
 - UN특별보고관 기자간담회 사회
 - 민가협 목요일회 참관 참여
-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난민 권리 회의(APCRR2) 참여(태국 방콕)
 - 운영위원회 참여
 - 한국의 난민법률지원 상황 발표
 - 아시아 지역 UN난민기구와의 대화 사회
 - 동아시아 난민실무그룹 회의 주재
 - 아시아·태평양 난민권리네트워크 부의장 피선

【공익법 일반】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중)
- 보험업계 공정입찰저해행위 공익제보자건 법률자문
- 법과 사회 이론학회 추계학술대회 '권력기관으로서의 검찰' 3부 '사건생산자로서 검찰 - 검찰의 권력기관화 및 담론권력의 문제 토론 참여
- 세계한인변호사회 총회 참여 및 '이주민의 권리' 발표
- 세계한인변호사회 총회, 이사회 & 공익위원회 참여



【공익법 교육·중개】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공익법' 특강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공감 협약식
- 사법연수원 법여성학회 특강, '여성인권과 공익소송'
- 공감 월례포럼 '카피레프트 운동', 강사 | 허민호(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여성인권】

- 대한변호사협회 여성·아동인권 소위원회 산하 '여아 성폭력 대응 법률 매뉴얼 TF' 회의 참여 및 집필
- 한국젠더법학회 발제 '다문화가족의 법률관계'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주최 공익인권포럼 '섹슈얼리티와 법, 그리고 인권' 참여
- 연세대학교 '남녀평등과 인간화' 수업 특강
- 다문화가족지원 법제에 대한 젠더적 고찰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강 '이주여성 인권실태와 법제현황'



【장애인권】

- 청각장애를 이유로 교수 재임용 거부된 후 문제제기과정에서 학교법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형사 변론 (~12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검토
- 장애인재활협회 주최 2009 RI KOREA 재활대회 '장애&시시비비', '고용 관련 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법' 토론 참여
- 시설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기획소송팀 회의 참여

【이주와 난민】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이주민의 사회권에 관한 법률교육
- '이주노동과 국제기준', '출입국과 국제기준', '이주여성과 국제기준', '이주민의 사회보장과 국제기준' 강의
- 피난처 주최 난민대상 난민법 설명회 '난민법 제정안 개요' 특강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주최 '이주민의 권리와 국제인권기준' 강의
- 송출기관 고발사건 참고인 조사 변호인 참여
- 이주인권연대 대전 심포지움, 이주운동 진단 '최근 법·제도와 이주운동'
- 보건복지가족부 의뢰,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작성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개선방안 포럼 참여, 한국의 이주민 법제 발표
- 고려대학교 GLOBAL LEGAL CLINIC 외국인인권팀 난민법제 세미나 참여
- 이주노동자/문화활동가 미투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주최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다문화사회 편입방안 제안 토론회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합법화 방안
-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 '미국의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사례 및 논의' 발표
- 국가인권위원회 2009년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보고서 작성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외국인인권소위원회 강의록 집필팀 회의 참여



[빈곤과 복지]

- 간주부양비 위법이유로 한 생계급여처분취소소송 (진행중)
- 재개발/뉴타운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청구 집단소송 (진행중)
- 용산참사 관련 활동
 -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 (진행중)
 - 법원의 수사기록열람·등사명령을 불이행한 검사 상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고소 (진행중)
- 최영희 의원실 주관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 공청회 발제
- 이주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시민행동 회의
- 해외입양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행동 회의

[주민자치]

- 아파트 인근송전철탑 건설관련 법률자문

[국제인권]

- 외교통상부, 영국대사관 주최 UN인권이사회 세미나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및 특별절차 결정 및 권고 이행방안' 발표
- 한국-필리핀-일본 이주과점 프로젝트 2차 재정보고서 & 중간보고서 작성
- 대한변호사협회 우두라스 한국인 형사피의자 사건 관련 법률지원단 회의 참여 (~12월)
-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촉구 기자회견

[공익법 일반]

- 대한AIDS예방협회 예방법 강의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15주년 토론회 참여
- 대한 AIDS 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주최, HIV 감염인 인권증진 토론회 발제
- 조승수 의원실 주최 특허발명의 정부 사용 제도 개선 토론회 발표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차별금지법 간담회 참여
- 반차별공동행동 전체회의 및 차별담론 소규모네트워크 회의 참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현안대응팀 회의 참여
- 가족구성원연구모임 회의 참여
- 의약품공동행동, 이주노동자에 대한 AIDS 강제검진 국가인권위 진정서 작성

[공익법 교육·증개]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특강, '인권으로서의 주거권과 그 실현'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특강, '변호사 공익활동과 공감의 공익소송'
-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특강 '희망을 그리는 법률가의 길'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NGO와 법의 지배 - 시민운동과 공익소송'
- 성균관대학교 공익인권법학회 특강 '공익법활동의 현황과 변호사의 역할'
- 공감 월례포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강사 | 김창수(노동광장 운영위원)



12월

【여성인권】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법률교육
- 다시함께센터 내부포럼 특강 '외국인여성 성매매 실태 및 법적 현황'
- 대한변호사회 여성·아동인권소위원회, 아동성폭력에 대한 법률대응 매뉴얼 작성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결혼이주여성인권증진을 위한 포럼' 토론
- 청주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뢰 지적장애청소년 성폭력 사건 상고심 제출 의견서 작성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빈곤과노동팀 회의 참여

【장애인권】

- 국가인권위원회, 신용카드 기능과 결부된 복지카드 발급시 지적장애인 배제규정의 장애차별 여부 관련 의견서 작성
- 탈시설정책위원회 기획소송팀 회의 및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 기자회견 참여

【이주와 난민】

- 김해지역 외국인 상점 무단침입 출입국단속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 일부 승소
- 라이베리아 난민신청자 여성 출입국관리사무소 면담심사 진행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외국인인권소위원회 회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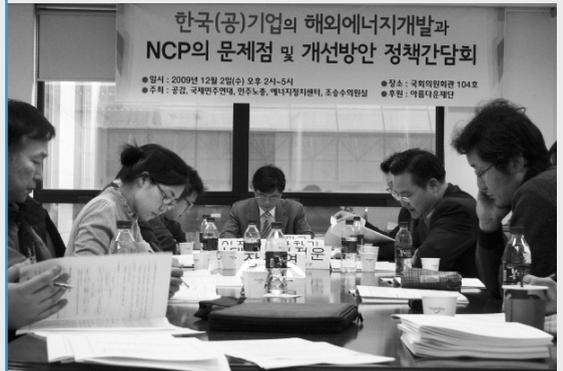
【빈곤과 복지】

- 재개발/뉴타운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청구 집단소송 (진행중)
- 용산참사 관련 활동
 -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 (진행중)
 - 법원의 수사기록열람·등사명령을 불이행한 검사 상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고소 (진행중)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보고대회 민생경제부분 발표
- 이주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시민행동 회의
- 해외입양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행동 회의



【국제인권】

- 조승수 의원실 등 주최 '해외자원개발정책위크숍' 사회
-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에너지정치센터, 조승수의원실 주최 '한국(공)기업이 해외에너지개발과 NCP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 간담회' 사회
- 아시아·태평양 지역 난민권리 네트워크(APRRN) 운영위원회 참여
- 제5회 아시아·태평양 변호사회(COLAP5) 국제준비회의(PC) 참여 & 비사법적 살인 실태조사필리핀 마닐라)



【공익법 일반】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공개변론
- 숙식비 공제로 인한 임금채무보증재확인 소송(상대방 제기)
 - 반소장 제출예정
- 서일초등학교 법률교육 강의
- 천주교인권위원회 주관 인권주일 인천서운동성당 미사 강론
- 대한변호사협회 조두순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참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공익소송사례집 중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정정사건' 부분 집필
- 다양한 형태의 가족차별 해소 및 가족구성권 보장 연구 모임 회의 참여
- 영성물등급위원회의 영화 '친구사이'에 대한 청소년관람불가판정과 관련한 자문 및 대응 회의 참여

【공익법 교육·중개】

-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공익법' 특강
- 공감 월례포럼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 강사 | 지성(장애여성 공감 활동가)



연도	날 짜	내 용
2003	12월	염형국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근무 시작
2004	1월	김영수, 소라미, 정정훈 변호사 근무 시작
	1. 16	공익변호사그룹 운영을 위한 간담회 개최
	2월	김민경 간사 근무 시작(~2005. 5)
	2월	부안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찬반주민투표 준비위원회 변호사 파견
	3월	제1차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지원사업' 진행(12개 공익단체)
	8월(~200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제반활동(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공동활동)
	11월	제2차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지원사업' 진행(12개 공익단체)
	12월	황필규 변호사 근무 시작
	12월(~현재)	버마 내 한국기업 인권감시활동 및 미국 하버드 로스쿨 International Human Rights Clinic과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공동 제출
2005	2월(~12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약기구의 한국 인권상황 심의 관련 NGO 보고서 공동 제출 및 현지(스위스 제네바) 활동
	3월	윤정원 펠로우 근무 시작(~2006. 2)
	3. 21-4. 7	전국 장애인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학교 진행
	3. 24(~2009년)	공감 인턴쉽 프로그램 시작 - 현재 정기인턴, 수시인턴 250명이 수료하였고, 2010년 현재 10기 인턴이 활동중 또한 매년 사법연수생 변호사실무수습, 로스쿨 실무수습 등도 진행 중.
	4월~12월	국제결혼중개구조 베트남·필리핀 현지조사 및 결혼중개업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
	5월	전영주 간사 근무 시작(~2007. 8)
	7월	제3차 '공익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진행(13개 공익단체)
	8월	송성수 펠로우 근무시작(~2006. 1)
11. 2	법무법인 총정과 공익소송 업무협약 체결	
2006	1월	공감 자문위원단 구성(15인)
	2월	제4차 공익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진행(11개 단체)
	2. 22	공감 2주년 기념 후원행사 '공감과 공감하기' 개최
	4. 19	37기 사법연수생 160명, 공익변호사기금에 기부약정
	6. 1~12. 31	차별에 맞선 소송-이주노동자 차별적 제도, 관행에 대한 기회소송
	6월~7월	우리는 선의의 파파라치-“차별적 국제결혼광고 반대 캠페인” 전개(차별적국제결혼광고대응을위한 공동행동)
	6월	권회 간사 근무 시작(~2009. 6)
	7.2	보험사의 장애아동 보험가입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8월	제5차 공익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시작(7개 단체)
	9월	김미라 펠로우 근무시작(~2007. 2)
	9월	2006주민참여가이드북-주민직접참여제도 실무매뉴얼 집필 (아름다운재단, 함께하는시민행동 발간)
	10. 11~10. 30	해외탐방-미국 공익법단체를 찾아서
	10. 13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등 정보공개 청구소송 승소

연도	날짜	내용
2006	10. 21~10. 30	스위스 제네바 UN 인권이사회 참석_NGO 반박보고서 제출
	11월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법률매뉴얼〉집필 및 법률교육 (대한변호사협회, 경기도노인학대예방센터 발간)
	12. 1	한국장애인인권상 정책개선부문 수상
	12. 7	제20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상 수상
	12. 3	정정훈 변호사, 제1회 무지개 인권상 수상
2007	1. 11~8. 20	황필규 변호사-University of Oxford Centre on Migration, Policy & Society 파견근무
	2월	장서연 변호사 근무 시작
	3월	희망변론 프로젝트-공익단체 법률지원 진행(7개 단체)
	5. 7	공익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학교 진행
	5월	〈이주노동자 자원활동가를 위한 법률매뉴얼〉발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기획)
	7월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집필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발간)
	6. 22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산업연수생 손해배상청구소송, 산업연수생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
	6. 26	중국 민주당원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 승소 - 2008. 11. 15 대법원 확정 판결
	7. 5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와 파트너십 체결
	7. 21	지방자치단체 음식물처리장 설치예산 낭비에 대한 주민소송 - 광명경찰서 및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광명시민을 대리하여, 전 광명시장 등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실시공 책임자들을 상대로 낭비예산 약 2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
	7. 26~8. 3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한국 정부 심의 회의 NGO 대표단 참석 - NGO의 반박보고서 제출
	8월	전은미 간사 근무 시작
	9.28	필리핀 가톨릭추기경 Gaudencio B. Cardinal Rosales로부터 감사패 받음
	10. 23~11. 22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활동가를 위한 권역별 법률교육
	12. 10(~현재)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 연대활동
12. 13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12. 26	비닐하우스촌 수정마을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소송 승소	
12월(~현재)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관련 NGO 보고서 공동 제출 및 한국인권 상황 관련 유엔특별절차 진정 공동 제출	
2008	1. 14	법무법인 총정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 중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법률지원활동을 법무법인 총정에 연계해 로펌과 공익단체 간 직접적인 법률지원협약 체결 중개
	2. 14~2. 16	제1회 공감 인권법 캠프 개최
	3월	차혜령 변호사 근무 시작
	3. 25	법조협회 제2회 사회봉사단체 우수단체 선정
	3. 26~28	필리핀 공익변호사단체연합인 Alternative Law Groups(ALG) 주최로 열린 Regional Conference on Lawyering for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사회정의와 인권을 위한 변론 지역회의)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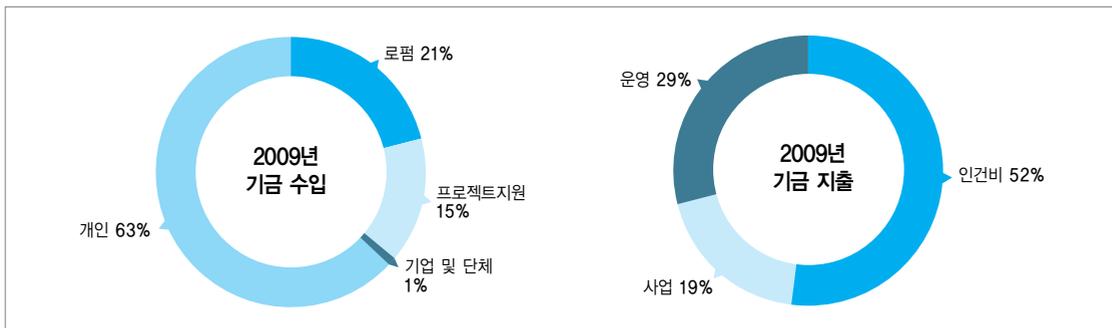
연도	날짜	내용
2008	4. 11(~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관련 점검 및 대응 활동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공동활동)
	4. 24~26	미국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 로스쿨 주최 '국제장애인 인권 심포지엄' 발제
	5. 14(~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국가보고서 작업
	5. 16	로펌 프로보노 담당변호사 간담회 개최 - 대형로펌의 공익활동 담당 변호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로펌의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
	5. 17	국제심포지엄 (로스쿨과 공익인권법 : 전망과 모색) 개최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로스쿨에서의 공익인권법 프로그램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6. 2	법무부의 이주노동 제도부 강제퇴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공동활동)
	7월	촉불집회 인권침해 관련 유엔특별절차 진정서 작업
	7. 15	군대내 스토킹피해 여군장교 항명죄 항소심변론에서 무죄판결 선고 (11.27 대법원 무죄확정판결)
	8월	김윤경 펠로우 근무시작 (~2009. 6)
	9. 3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10. 15	흑석동 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청구소송 일부승소 (주거기본권확보를위한동작공동대책위원회공동활동)
	10. 21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다국적기업 국제 인권기준 국내 적용을 위한 워크숍' 발제
	11. 7	노숙인쉼터 설치운영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12. 2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발표 (난민정책개선모임 공동활동)
2009	1. 8	버마 소수민족 여성에 대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 승소
	1. 20(~현재)	용산참사 관련 활동
	1. 22	HIV양성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취소소송 승소 대법원 확정
	2. 12	다문화사회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방안 모색 간담회 발제 (이주정책개선모임 공동활동)
	2. 19~2. 21	예비로스쿨생, 예비사법연수원생 대상 제2회 공감 인권법 캠프 개최
	4. 2	이주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 활동 시작
	5. 2	위법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주민소송 승소
	5. 25	공감 5주년 기념 세미나 '공익법 운동의 성과와 도전 및 후원행사 '공감 다섯살, 참 고맙습니다' 개최
	6. 25	안주영 간사 근무 시작
	7. 7	재생산권 침해 베트남 여성의 민사소송 승소
	9. 7	Brittan Heller 펠로우 근무 시작
	9. 23	사례로 살펴보는 주민소송 가이드북 '주민소송 사용설명서' 발간
	10. 9	시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센터와 법률지원 협약
	10. 13~14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UN특별보고관 초청 워크숍 기획 및 진행
	12. 12~14	제5차 아시아태평양변호사회의 국제준비위원회 참가
	12. 13	외국인 상점 출입국단속 국가배상 사건 승소
	12. 14	농촌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사건 승소
12. 17	「집회·시위의 자유와 법정책의 문제점」토론회 공동주최	

2009 한눈에 보는 공감살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재정은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기금'을 기반으로 합니다. 보내주신 기금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경계를 확장하기 위해 일하는 공감의 공익변호사들을 지원하는 배분사업과 운영비, 인건비에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공감에 전해주시는 재능, 열정, 마음 등 여러 모양의 기부는 공감을 힘차게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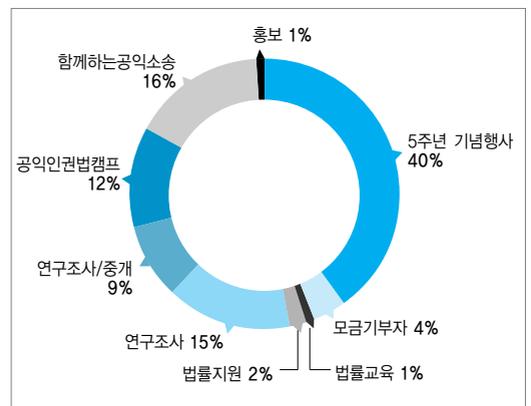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마음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수 입		지 출	
로펌	113,000,000	인건비	227,191,122
프로젝트 지원	79,662,900	사업비	85,252,919
기업 및 단체	7,480,000	운영비	127,291,337
개인	342,897,238		
계	543,040,138	계	469,735,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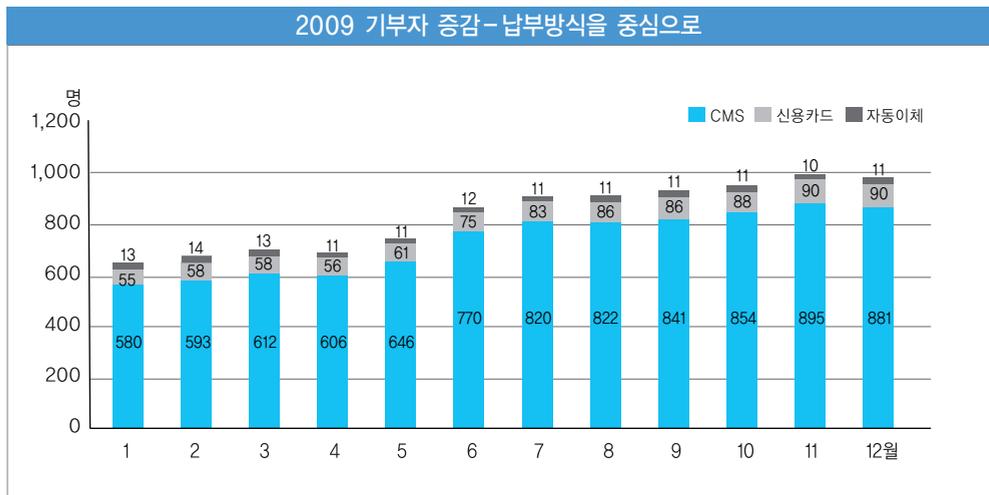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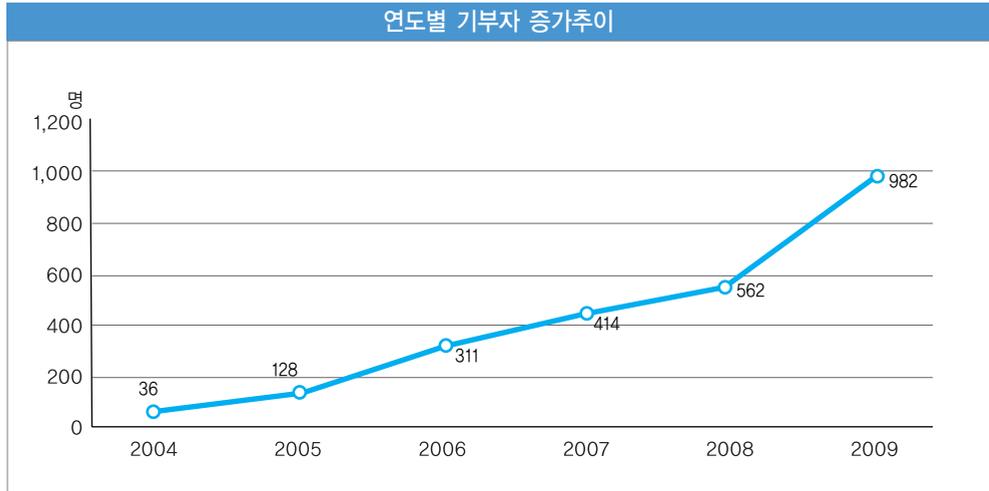


사업비 세부내역

항 목	세부내역	집행액
5주년 기념행사	공익법 세미나 및 기념행사 진행비	34,510,513
모금기부자	기부자 지원 및 모금행사 등 진행비	3,365,030
법률교육	법률교육시 여비, 자료비 등	1,203,110
법률지원	연계단체 법률지원, 심사등 관련 사업비 일체	1,868,050
연구조사	법률연구, 세미나 등 연구사업 진행비	12,759,523
연구조사/중개	인턴 교육 및 운용에 관한 사업비	8,020,210
공감인권법캠프	예비 로스쿨생, 예비 사법연수생 대상 인권법캠프 진행비	9,840,216
함께하는 공익소송	소송지원에 따른 인지도, 송달료 등	13,623,107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뉴스레터 발간 등 홍보 사업비	848,160
계		86,037,919



2009 공감 기부자 현황



후원안내



아름다운 나눔은
내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비록 한 사람의 나눔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작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마음들이 모여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으로 마련되는 '공익변호사기금'은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변호사의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 인권의 경계 확장과 적극적 사회변화를 위한
공익변호사들의 굳은 결심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기금'을 재정 기반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기금'은 비영리, 전업으로 공익법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홈페이지 | www.kpil.org (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e-mail | gonggam@beautifulfund.org

계좌번호 | 하나은행 162-910001-07637 예금주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지정대상단체로 아름다운재단에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시 비용인정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연초에 1년 동안의 기부액을 합산하여 1월 초에 일괄 우편 발송해드리며,

원하시면 별도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공익변호사기금 기부자님들께는 공감이 발행하는 사업보고서와 자료집 등의
출판물과 온라인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공감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로서 공감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Tel | 02-3675-7740 e-mail | gonggam@beautifulfund.org

*에 필로그

염형국.....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존 레논처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며 사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장애인들과, 아이들과, 이주민들과, 성소수자들과,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요,
그런 세상을 꿈꾸며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김영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처음처럼, 공감 파이팅

소라미..... "나는 희망에 차 있다. 하지만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희망도 없다.
변화를 이루기 위해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희망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 허워드 진

7년째 아침마다 콧노래 흥얼거리며 출근합니다.
여전히 현장과 동료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깨칩니다.
무엇이 얼마나 변했는지 하루하루 바쁜 일과 속에서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를 하고 있고, 희망을 찾는 분들과 함께 한다는 점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나날들입니다.

정정훈..... 시인 김언은 "내 말은 뼈를 부러뜨리고 나온다."고 썼다.
그렇다면 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염형국



김영수



소라미



정정훈

앞으로 나아가건 제자리걸음을 하건, 아니면 심지어는 뒷걸음질을 치건 -----황필규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항상 돌려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도 그 중 한 분일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잔인한 사회 -----장서연
시련은 많아도 포기는 없다.
굿바이 2009년.

상상을 멈추지 않기! -----전은미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그래서 그 누구도 외롭지 않은 곳을
끊임없이 상상하며 꿈꾸어가기!^^

다산께서 일찍이 “대저 둔한데도 계속 천착하는 사람은 구멍이 넓게 되고, -----차혜령
막혔다가 뚫리면 그 흐름이 성대해진다”고 하셨다.
부지런히 천착하고, 부지런히 뚫고, 부지런히 연마하자. 마음을 다잡고 일하자.

조금 더 자라나기 위한 생각과 고민들. 다시 만난 성장통 -----안주영



황필규



장서연



전은미



차혜령



안주영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09 연간보고서

발행일 2010년 3월

발행처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58-1번지 북촌창우극장 3층
Tel 02-3675-7740 Fax 02-3675-7742
www.kpil.org

기획·편집 전은미

디자인 nina's eye 02-2604-0139